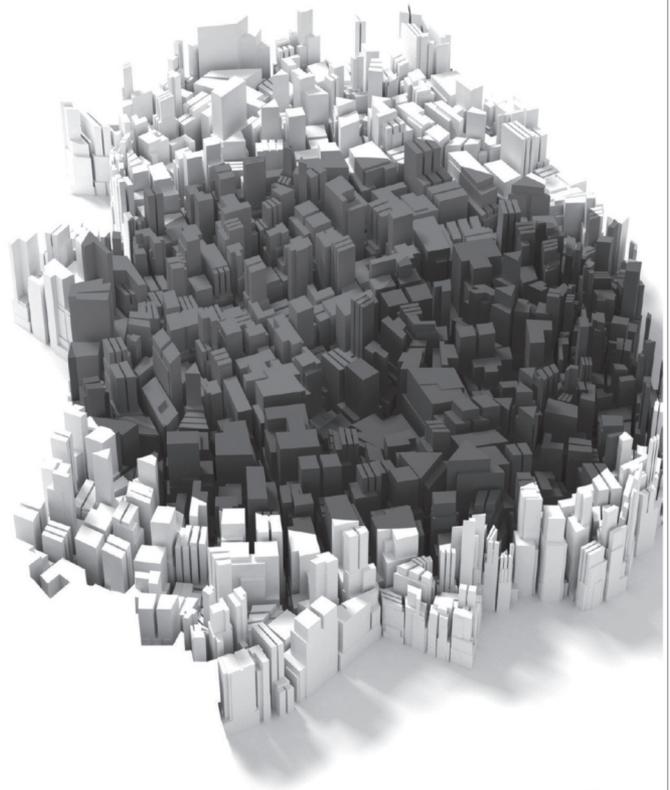


2020. 6. 30 통권

제10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발간사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정치·안보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와 위협이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문제와 극우주의자들의 대립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국가안보·국민안전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제10호에서는 ‘경호관련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업의 경험 마케팅이 고객태도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수상레저 발전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과학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증분석-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으로 총 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환경에 맞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는 한국연구재단(NRF) 학술지 평가결과 학술등재후보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학회 임원님 및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고 생각되며 등재후보지가 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간을 위해 논문을 투고해주신 연구자분들과 심사위원, 학회 임원분들과 회원,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많은 투고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노고를 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30일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장 장 항 배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회장 박준석

차례

- 경호관련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안철범 · 박준석 · 정성배 7

- 농촌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송재구 · 이상열 33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대권 · 엄유진 · 김신혜 59

- 민간경비업의 경험 마케팅이 고객태도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진환 87

- 수상레저 발전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이세환 109

- 과학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증분석-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김대중 · 한형서 · 김태우 127

Contents

- The Influence of the Choice Motives of College Students in Security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Decision of their Paths
Ahn, Cheol Beom · Park, Jun Seok · Jung, Seong Bae 7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in Rural Residents
Song, Jae Goo · Lee, Sang Yeol 33

- A Study on the Impack of CPTED on Fear of Crime—Focus on college students—
Lee, Dae Kwon · Aum, Yoo Jin · Kim, Sin Hye 59

- The Effect of Private Security 's Industry Experience Marketing on Customer Attitude and Customer Satisfaction
Kim, Jin Hwan 87

-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Analysis of Amendment of Water Leisure Safety Law for Development of Water Leisure
Lee, Se Hwan 109

-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fessionalism of Scientific Investigation —Focusing on the Scientific Investigator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Kim, Dae Joong · Han, Hyung Seo · Kim, Tae Woo 127

경호관련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안 철 범 · 박 준 석 · 정 성 배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경호관련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안 철 범* · 박 준 석** · 정 성 배***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경호 관련학과 및 다른 전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한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경호관련학과의 대상 중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 있는 Y대학교, K대학교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Window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분석, 배경 변인과 요인간에 차이검증,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동기는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 중 전공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재적 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재적 동기는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 중 진로결정수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재적 동기는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내재적 동기는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 중 진로결정수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재적동기는 진로결정 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실로 대학에서의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에 활용될 수 있는 경험적인 자료로 이바지할 것이며 경호관련 전공학생들의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데 있다.

주제어: 경호, 민간경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수준

* 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제1저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교신저자)

*** 국제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겸임교수(공동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
|---|

I. 서 론

대학은 자아실현 뿐 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유능한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고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얻으며(송윤신, 2003), 더 나아가 전문인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김수영, 2007). 이런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며 직업은 우리 생계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직업으로서의 일이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며 자아가 잡혀 우리의 삶에서의 대부분 시간을 차지하게 되므로 인생을 사는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용인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2009).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몰두하는 자체가 인간에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행복과 의의를 제공하며, 또한 이런 점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진로 선택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박채화, 2001). 이에 경호·경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률 정비 등과 더불어 일선 경호원과 경비원의 전문성과 처우개선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박준석, 박대우, 2004; 구희영, 손영각, 조민희, 2016; 정지덕, 2017; 최승희, 이재민, 2018).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개인의 가능성을 탐색, 발견하게 하고 이를 개발시킴으로써 자신의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경호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최상권, 2012; 김신혜, 장예진, 김재엽,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호관련 전공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수준을 이해하고 대학에서는 그에 맞게 세심히 지도할 필요가 있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학관련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의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경호의 개념

1) 공경호

경호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형식적 의미의 개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Presidential Security Service)에서는 경호를 경비와 호위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경호는 삼국시대이전의 호위무사들이 왕을 호위하면서부터 경호·보호하고 경계한다는 내용과 같이 지금의 경호라는 단어가 형성된 것이다(허홍, 1998). 과거에도 명칭만 다를 뿐 경호제도는 존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금군·친위대 또는 숙위라고 하는 경호인과 경호제도가 과거부터 존재해 왔다(김창호, 2006). 공경호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수상, 국회의장 등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에 의한 경호활동을 말한다(김성철, 2012). 공경호 대상자 중에 특히나 국가의 주요인물(대통령, 국왕, 해외 국민 등)은 헌법상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한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박준석, 2000).

2) 민간경호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 가지의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의 활동으로 정의된다(Bilek & Lejins, 1977). 또한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협로부터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라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이윤근, 2001).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일련의 모든 예방적 활동을 마하며, 형식적으로는 현행 실정법상에서 규정하는 경비업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민형, 2009).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게 되며 경비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대처능력을 가지고 엄정한 규율에 따라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박준석, 2003).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적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민간경비는 넓게는 범죄를 포함하여 낭비, 테러, 사고, 비윤리적 활동 등의 다섯 가지 유형의 위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서진석, 2002).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협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Arthur. J. Bilk & peter, 1997).

2. 전공선택동기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적성 및 소질이 어느 정도 일치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는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또는 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 했다(정보연, 2010). 최근 들어 자신의 적성에 맞춰 전공 선택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적성 및 개인적 성향은 무시된 채 성적에 따르거나 주위의 권유에 따른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많은 학생들이 전공에서의 적응에 실패하고 방황하게 된다. 그러하여 뒤늦게 전공을 바꾸거나, 새로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이런 결과는 학생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저 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김수영, 2007; 이선영, 2009; 서은희, 2002). 전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의 가치관, 사회기여 욕구, 개인적 경험과 가정환경, 개인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노상학, 1998). 내적동기로 학문적 흥미와 적성, 전공을 통한 자기개발가

능성을 제시하고, 단기·외적동기로는 선배나 친구의 권유, 부모와 친지의 권유, 전공인기도, 전공공부의 어려운 정도, 성적 및 전공승인 가능성을, 장기·외적동기로는 취업의 용이성, 높은 수입과 사회적 지위 보장, 학문분야의 발전 전망이 전공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명애, 2007).

3. 전공만족도

국내대학의 전공은 외국의 전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학과의 의미가 강하며 동시에 대학교 생활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태도를 의미한다(한예정, 2014).

이와 같은 전공만족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전공 교과목의 편성과 내용, 교과목간의 연계성 등을 포함하는 교과만족, 둘째, 수업분위기와 내용, 수업 진행 방식 등의 수업만족, 셋째, 소속학과의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교수 간의 관계 등의 관계만족, 넷째, 전공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적 지각의 인식만족 등이 있다(정희영, 2010). 전공만족도를 인식만족, 교육만족, 교과만족, 일반만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졸업 후 관련 분야로 진출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공만족이 낮다는 것은 관련 분야의 진출 및 직업선택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였다(천태중·이결재, 2015). 이상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논문에서는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공만족도를 직업의 안정성,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진로결정수준

진로(career)라는 말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생동안 수행하게 되는 일의 총체(Hoyt, 1974)로서 진로결정수준이란,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한다고 하였다(장기명, 1998).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내리며 생활한다. 그 결정 속에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일생을 바꿀 만큼 비중있고 중요한 것도 있다. 자신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결정들에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포함되며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발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Tolbert, 1980). 지금까지 진로상담 분야에서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진로상담의 주요 목표는 진로미결정수준을 결정수준으로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진로관련 연구에서도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득연, 2004). 진로결정이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 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진로발달이 이루어진 결과, 즉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그러한 결정을 의미한다면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부족, 선택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환경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각하지 못한 것 등의 이유로 진로를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강선영, 1996). 즉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의 특성이기보다는 어떠한 한 상태로서, 시간이 흐르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진로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결정 상황에서도 결정을 회피하려는 개인의 성격상의 특성을 나타낸다(Osipow, 1999).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는 학교, 성별, 지능수준, 동기, 가치, 관심사, 흥미,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수준, 교육수준,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유전적요인, 환경적조건, 진로정체감, 불안수준, 자아정체감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있었다(문승태, 2003).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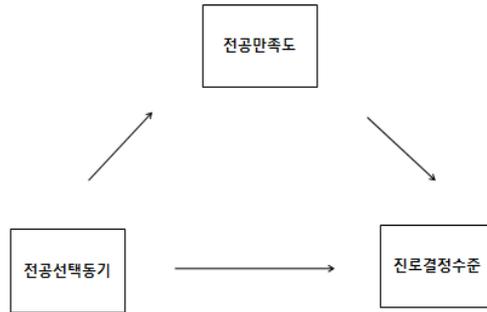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경호관련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학 연구에서 이루어진 경험적·이론적 연구에 기초하여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분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관계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동안 교육한 분야에서 여러 학과의 전공선택과 전공만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변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은 전공선택과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2) 연구가설

가설 1.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요인 중 내재적동기 측면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요인 중 외재적동기 측면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요인 중 내재적동기 측면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요인 중 외재적동기 측면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라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요인 중 교과만족 측면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요인 중 일반만족 측면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요인 중 인식만족 측면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경호 관련 전공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표본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유의표집(purpos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모집단의 전체를 모두 확인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연구자의 이론적, 실용적 관심에 따라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경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52개의 경호관련학과를 대상 중 경기도에 위치해있는 Y대학교, K대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조사된 경호관련학과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경호관련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배경변인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배경변수로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변인, 성별, 연령, 학년, 학업성적과 전공선택동기의 하위변인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와 전공만족도의 하위변인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으로 확신함, 불확신함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1) 신뢰도 분석

신뢰도는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 사이의 일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개념의 신뢰도 파악을 위한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문항들 간의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신뢰성이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

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즉 신뢰성은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등으로 표현 될 수 있는 개념이다. 신뢰성은 어떤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 조사결과가 부정확한 측정 자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 검사법(test-retest method), 복수양식법(multiple forms technique), 반분법(split-halfmethod), 내적 일관성(o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Cronbach's α 개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보통 0.7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하고, 0.4이상 0.7미만은 보통으로 평가된다(채서일, 2005).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공선택동기 14개, 전공만족도 20개 진로결정수준 18개 52개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897, 전공만족도에 대한 신뢰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0.944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52개의 문항을 모두 사용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에 대한 결과인<표 1>을 제시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 도구들 가운데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전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 점수를 산출하며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와 확신의 부족, 접근-접근 갈등, 선호하는 선택에 대한 지각된 외적 장애물, 개인적 갈등 등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네 가지 원인을 진단하도록 구성되었다. 진로와 전공 선택에 관한 확신수준을 나타 내는 1-2번 문항과 진로결정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 및 진로 미결정을 측정하는 3-18 번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문화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된다.

〈표 1〉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구분		Cronbach's α 값	항목 제거시 Cronbach's α 값
전공 선택 동기	전공선택동기 1	.897	.888
	전공선택동기 2		.887
	전공선택동기 3		.886
	전공선택동기 4		.885

	전공선택동기 5		.883
	전공선택동기 6		.890
	전공선택동기 7		.886
	전공선택동기 8		.899
	전공선택동기 9		.893
	전공선택동기 10		.887
	전공선택동기 11		.887
	전공선택동기 12		.881
	전공선택동기 13		.890
	전공선택동기 14		.909
전공 만족도	전공만족도 1	.940	.939
	전공만족도 2		.941
	전공만족도 3		.943
	전공만족도 4		.942
	전공만족도 5		.940
	전공만족도 6		.939
	전공만족도 7		.940
	전공만족도 8		.941
	전공만족도 9		.939
	전공만족도 10		.940
	전공만족도 11		.939
	전공만족도 12		.938
	전공만족도 13		.942
	전공만족도 14		.944
	전공만족도 15		.940
	전공만족도 16		.940
	전공만족도 17		.939
	전공만족도 18		.941
	전공만족도 19		.947
	전공만족도 20		.94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척도의 문항 내용을 청소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에서 ‘진로결정’을 보기 위해 문항 3-18번을 역으로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문항 1-2번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있어 확신수준이 높음을, 3-18번 문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Osipow(1999)가 개발한 진로결정 척도의 신뢰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과 .82였으며, 이를 번안한 고향자(1993)의 번역본은 Cronbach's α .86, 반분신뢰도 .80, 검사-재검사 신뢰도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ronbach's α .93으로 각 하위척도 및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신뢰도 분석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진로결정수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93

2) 타당도 분석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 관한 측정항목의 타당성의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적재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직교회전 방식(Varimax)을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변수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1) 전공선택동기

요인분석을 실시한 하여 문항의 큰 하위 요인은 2개의 요인으로 구성 하였으며,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래와 같이 <표 3>으로 나타내었다. 해당 모델의 분산설명력은 내재적동기 75.491%, 외재적동기 분산설명력은 53.820%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간의 고유값은 내재적 동기는 5, 외재적 동기는 3.883으로 나타났다. KMO구형성 검정치는 0.867로 도출 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값은 3025.314(df=105, sig=.000)이다. 도출된 요인명은 선행연구에서 각 요인에 내재된 변수들의 내용과 특성 및 결과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나온 값을 고려하여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한 Cronbach's 알파의 수치는 '내재적 동기' 0.945, '외재적 동기' 0.850으로 나타나 2가지 요인의 수치 모두 기준치 0.6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표 3〉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변수	평균값	요인 적재값	고유 값	분산 설명률(%)	Cronbach's α
내재적 동기	내재적동기 1	3.77	.791	5.284	75.491	.945
	내재적동기 2	3.77	.911			
	내재적동기 3	3.81	.899			
	내재적동기 4	3.38	.880			
	내재적동기 5	3.33	.838			
	내재적동기 6	3.75	.853			
	내재적동기 7	3.43	.818			
외재적 동기	외재적동기 1	2.27	.709	3.767	53.820	.850
	외재적동기 2	2.08	.727			
	외재적동기 3	3.24	.597			
	외재적동기 4	2.34	.816			
	외재적동기 5	2.33	.807			
	외재적동기 6	2.44	.708			
	외재적동기 7	2.88	.598			

설명 분산의 누적값: 46,272 ,KMO= .867
Bartlett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3025.314(df=91,p. < .001)

(2) 전공만족도

요인분석을 실시한 하위 문항의 큰 하위 요인은 5개의 요인으로 구성 하였으며, 전공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래와 같이 <표 4>로 나타내었다. 해당 모델의 분산설명력은 교과만족 68.719%, 관계만족 분산설명력은 74.815%, 일반만족의 분산설명력은 71.601%, 인식만족의 분산설명력은 64.560%, 진로만족의 분산설명력은 77.338%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간의 고유값은 교과만족 4.123, 관계만족 2.244, 일반만족 3.580, 인식만족 3.874, 진로만족 1.547로 나타났다. KMO 구형성 검정치는 0.922로 도출 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값은 3955.257(df=231, sig=.000)이다. 도출된 요인명은 선행연구에서 각 요인에 내재된 변수들의 내용과 특성 및 결과를 고려하여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만족’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한 Cronbach's 알파의 수치는 ‘교과만족’ 0.908,

‘관계만족’ 0.828, ‘일반만족’ 0.900, ‘인식만족’ 0.888, ‘진로만족’ 0.704로 나타나 5가지 요인의 수치 모두 기준치 0.6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표 4〉 전공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변수	평균값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교과 만족	교과만족 1	3.38	.682	10.030	63.989	.919
	교과만족 2	3.76	.802			
	교과만족 3	4.04	.686			
	교과만족 4	3.42	.765			
	교과만족 5	3.33	.746			
	교과만족 6	3.74	.689			
	교과만족 7	3.83	.704			
	교과만족 8	3.73	.753			
일반 만족	일반만족 1	3.36	.783	4.175	69.578	.900
	일반만족 2	3.42	.640			
	일반만족 3	3.31	.751			
	일반만족 4	3.39	.759			
	일반만족 5	3.77	.698			
	일반만족 6	3.97	.783			
인식 만족	인식만족 1	3.80	.711	3.904	65.068	.890
	인식만족 2	3.96	.637			
	인식만족 3	3.86	.647			
	인식만족 4	3.83	.772			
	인식만족 5	2.36	.666			
	인식만족 6	3.36	.855			

설명 분산의 누적값: 50.152 ,KMO= .905
Bartlett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4743.016(df=190,p.< .001)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여 처리될 것이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기법을 활용하려한다.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 효과를 분석하려 하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관련전공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증분석 결과이며 가설검증을 실행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 각 하위개념을 구성하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의 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넷째,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겠다.

IV. 연구결과

1.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밑에 보여주는 <표 5>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관하여 그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성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모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전공선택동기		교과만족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수준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일반만족	인식만족	
내재적동기	1					
외재적동기	.357	1				

	**					
교과만족	.256 **	.226	1			
일반만족	.584 **	.853 **	.335 **	1		
인식만족	.453 **	-.217 **	.613 **	.415 **	1	
진로결정수준	-.138 *	-.221 **	.001	-.226 **	-.102	1
* p<.05, ** p<.01 *** p<.001						

2.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공 선택동기에 따라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 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2 (Adj.R)
	B	SE	베타				
(상수)	2.050	.154		13.340	.000 ***		
내재적동기	.329	.041	.411	8.088	.000 ***	52.565	.273 (.268)
외재적동기	.137	.046	.164	3.003	.003 **		
종속변수 : 전공만족도 *p<0.05, **p<0.01, ***p<0.001							

분석결과, 전공선택동기는 진로결정 수준에 대하여 유의수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재적동기’는 전공선택동기의 하위 요인 중 전공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재적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적성, 흥미, 장래희망 등에 근거하여 전공선택동기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H 1은 채택 되었다.

3.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공 선택동기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전공선택동기는 진로결정 수준에 대하여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재적동기’는 전공선택 동기의 하위요인 중 진로결정수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재적동기’는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 중 일부분의 가설H 2-2은 채택 되었다.

<표 7> 전공선택동기와 진로결정수준 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2 (Adj.R)
	B	SE	베타				
(상수)	3.784	.175		21.635	.000 ***		
내재적동기	-.05 1	.046	-.068	-1.09 4	.275	7.838	.530 (.460)
외재적동기	-.16 5	.52	-.197	-3.16 5	.002 **		

종속변수 : 전공만족도 * $p < 0.05$, ** $p < 0.01$, *** $p < 0.001$

4.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공 만족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일부분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과만족’은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진로결정수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중 일부의 가설H 3-2은 채택 되었다.

〈표 8〉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2 (Adj.R)
	B	SE	베타				
(상수)	3.565	.226		15.755	.000 ***		
교과만족	.124	.067	.136	1.854	.065	7.764	.770 (.670)
일반만족	-.220	.051	-.272	-4.27	.000 ***		
인식만족	-.066	.070	-.072	-.950	.343		

중속변수 : 전공만족도 *p(0.05, **p(0.01, ***p(0.001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경호관련 학과의 대학생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표본추출을 4년제 대학교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중 Y대학교와 K대학교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중 유의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적용하여 실시하였고,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보름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하여 설문지에 응하도록 하였다. 불성신한 응답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300부중 283개의 설문지를 Window SPSS 23.0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요인간의 회귀분석으로 가설을 설정하여서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재적동기’는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 중 전공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재적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적성, 흥미, 장래희망이다. 따라서 가설H 1은 채택 되었다. 즉, 전공선택동기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요인간의 회귀분석으로 가설을 설정하여서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선택동기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재적동기’는 전공선택동기의 하위

요인 중 진로결정수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재적동기'는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 중 일부분의 가설H 2-2은 채택 되었다.

요인간의 회귀분석으로 가설을 설정하여서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일부분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과만족'은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진로결정수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일부의 가설H 3-2은 채택 되었다.

현대 사회는 지금 이 순간 까지도 고도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정보화가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서비스 산업에서 경호·경비 산업도 이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에 직업관의 변화와 사회적 노동변화로 청년 실업률이 높게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대학생 각자가 올바르게 바른 정신관의 직업선택으로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현재 경호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이와 같은 실증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공선택에 따른 연구결과로 학술적 측면과,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측면, 경호 산업 측면에서 시사하고자 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 학계에선 경호무도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 되어도 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는바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경호관련 대학생 집단의 경우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줄 지도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호관련전공자의 낮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도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동시에 취업준비과정, 취업전략, 진로소명, 학과충성도, 진로포부 등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실증연구가 되었

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추후 이러한 논리구조를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융합적 통합보안이라는 학문이 새로 생기고 다양한 학과도 생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안에서도 물리적 보안에 분야에서 기업이나, 정부에선 보다 진화되고 능숙한 실력의 인재들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경호학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외국어 공부와 인성을 쌓아 보다 나은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구희영, 손영각, 조민희 (2016).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제3호.
- 김성철 (2006).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학과 충성도가 진로정체감 및 직업선택과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2007).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혜, 장예진, 김재엽 (2017). 국기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경호 보안 분야 교육과정 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제4호.
- 김창호, 정정석, 이영오 (2006).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1, pp.21~36.
- 노상학 (1998). 한국과 미국 대학원생의 사회복지 전공선택 동기요인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강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문승태 (2003).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관계. 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석 (2000). 한국 대학의 경호관련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발전방안.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석, 박대우 (2004). 한국 민간경호 · 경비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7:190-211.
- 박채화 (2001). 축구선수들의 진로의식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서은희 (2002). 대학생의 인지양식과 전공선택 및 학업 적응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석 (2002). 민간경비의 개념정의와 새로운 경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정진환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송윤신 (2003). K대학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과만족도 조사 연구. 경북논총, 7:297.
- 이득연 (2004).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진로결정수준별 공변량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애 (2007). 학부제에서의 전공 선택 및 전공결정 과정 탐색. 한국교육평가학회, 20(3).
- 이민형 (2009). 한국민간경비제도 정립을 위한 경비업법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9).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및 전공만족, 진로선택에 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연 (2010).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덕 (2017).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전문성 향상 방안.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제5호.
- 정희영 (2010).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기명 (1998).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학생지도연구, 19,101-132.
- 천태중, 이걸재 (2015). 의료관광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원, 30(5): 217-242.
- 최상권 (2012). 경호학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희, 이재민 (2018).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실태 및 정립 방안.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제7호.
- 한혜정 (2008). 중학교 진로상담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식 실태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허 흥 (1998). 요인경호에 관한 연구 4개국 경호제도와 위해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외국문헌

- Arthur J .Bilek & Peter P. Lejins. (1977). Private Security. Cincinnati Ohio: Anderson Publishing Co.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1), 147-154.
- Tolbert (1980). Career Developmentt Theories: What Help for Older Persons.

3. 기타

- 용인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2009).
- 이윤근 (2001). 엑스퍼트월드.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Choice Motives of College Students in Security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Decision of their Paths

Ahn, Cheol Beom^{*} · Park, Jun Seok^{**} · Jung, Seong Bae^{***}

In this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the level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security and other major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llege students at Y and K universities located in Gyeonggi-do, among the subjects of the bodyguard related department. The analysis of the data used the Window SPSS 23.0 program. The conclusions that analyz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analysi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difference verification between background variables and factors,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intrinsic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among sub-factor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cond, extrinsic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Third, intrinsic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mong the sub-factor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Fourth, extrinsic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Fifth, intrinsic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level among sub-factor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extrinsic motivation was positively influenced on career decision level.

*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Researcher(The 1st Author)

** YongIn University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Professor(The Corresponding Author)

*** Kookje University Department of Security Professor(The Co-Author)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will contribute to empirical data that can be used for career guidance and career counseling in universities, and to provide basic data in career decision making for security related major students.

Key Words: Security, Private Security, Major Choice, Major Satisfaction, Progress Decision Level

농촌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송재구·이상열

농촌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송재구* · 이상열**

[국문초록]

그동안 농촌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지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어 농촌지역을 범죄두려움 지역에서 간과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범죄피해 두려움에 있어서 도시가 농촌보다 조금 높은 편이지만, 농촌지역 거주민의 절반 가량이 범죄피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농촌지역 범죄 및 범죄두려움 유발환경 등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STATA 13.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 감소 및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유발 환경개선이다.

둘째, 범죄처벌법이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 경미한 무질서 사범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내의 무질서 억제이다.

셋째, 노인 맞춤형 경찰활동 및 치안전략 강화이다.

넷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강화이다.

다섯째, 농촌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주제어: 농촌지역, 범죄두려움, 환경개선, 노인 맞춤형 경찰활동, 인식 변화

* 중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범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는 국민들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박종훈, 임형백, 이성우, 2015).

최근 들어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람들의 정보접근이 쉬워지면서 간접경험으로 범죄피해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박종훈, 이경재, 이성우, 2018). 범죄두려움은 개인이 일상활동 가운데 시간과 장소와 방법 등을 불문하고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활동 등을 폐쇄적으로 변경하거나(조일형, 2015), 사회적·신체적·직업적 등 다양한 분야에 제한적 행동이나 생활변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조상현, 박외병, 2017).

한편 국민들이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이면에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지역적·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예전보다 더 많은 취약성을 주지시키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급증하는 삶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불평등의 강화는 개인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켜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 이 같은 현상들에 따라 인해 사람들은 광범위한 불안을 표출하게 되고 그러한 불안은 전이된 불안의 형태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출될 수 있다. 전이된 불안으로 나타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에는 현실의 사회불평등적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장안식, 2015).

현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이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소규모 형태의 농업 등 일차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같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층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결국 농촌지역에는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이 주로 정착함으로써 범죄기회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인층의 취약한 범죄방어능력을 이용한 사기, 절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허경미, 2011).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농촌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지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 내리고 있어 농촌지역을 범죄두려움 지역에서 간과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 간의 총 범죄 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피해 두려움 역시 도시와 농촌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중, 이성우, 2011).

범죄피해 두려움에 있어서 도시가 농촌 보다 조금 높은 편이지만, 농촌지역 거주민의 절반 가량이 범죄피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촌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농촌지역 범죄 및 범죄두려움 유발환경 등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그동안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농촌지역 개념 및 특성

일반적으로 농촌이란 인구면에서 도시보다는 적고, 인구밀집도가 낮으며, 경제적 규모가 적고, 직업이 대부분 1차 산업으로 고정화되어 있으며, 소득수준 또한 상대적

으로 도시보다 낮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riddel, 2009; Pruitt, 2009; Rotolo and Tittle, 2006; 허경미, 2011).

한편 농촌성이란 농촌지역의 문화 또는 그 주민의 정체성에 있어서 지리적인 특징이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 및 가족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보존하는 전통적인 가치와 농토가 있고, 인구수, 밀집도 등이 도시와 차이를 보여야 한다(허경미, 2011).

한편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과 생활양식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양식 및 노출, 예를 들어 야간 외출이나 여러 가지 활동 참여 등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활동이론에서 제시하는 범죄발생 요소 또한 도시와 농촌은 그 환경적 특성 및 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 동기화된 범죄자는 물론 범행에 적합한 피해 대상의 존재 그리고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감시의 수준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범죄발생에의 영향력이 차이가 발생한다(강지현, 2019).

2. 범죄두려움의 개념

범죄두려움이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집단에도 실재하며, 삶의 질을 저해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된 관련 연구들은 오늘날 범죄학의 하위분과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범죄두려움이라는 정서적 반응 내지 인지의 경계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까닭에 합의된 정의는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박기태, 2019).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피해의 위험을 지각함에 따라 야기되는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Ferraro, 1995; 박종훈, 임형백, 이성우, 2015). Covington & Taylor(1991)는 범죄두려움을 ‘우리에게 일어날 범죄와 피해에 따른 감정적 반응’이라 하였다. 즉, ‘언제, 어디서나 범죄피해자가 된다는 감정적인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범죄두려움은 ‘개인 혹은 타인이 특정 상황(장소)에서 (특정)범죄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권주영, 2016). 장철영(2014)은 범죄두려움이란 ‘범죄로부터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자타를 불문하고 범죄로부터 느끼는 피해가능성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두려움’이라고 정의했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을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대해 개인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범죄두려움의 설명 모델 및 영향요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등 개인적 요인들과 동네의 방치된 쓰레기, 낙서 등 무질서한 물리적 무질서 및 동네의 불량매, 가출 청소년, 노숙자 등 사회적 무질서 등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의 유대감, 신뢰감 등 사회적 요소들과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구,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치안정책연구소, 2015).

한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피해경험 모델, 범죄취약성 모델, 지역무질서 모델, 사회통합 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영향요인
취약성 모델	여성(성별), 노인(연령), 소수인종, 취약지역 거주민, 범죄피해에 대한 직·간접 경험(언론매체의 영향), 교육수준, 수입
무질서 모델	거리의 쓰레기, 낙서, 방치 차량(물리적 무질서) 거리의 불량매, 만취자, 노숙인(사회적 무질서)
사회통합 모델	지역해체, 낮은 유대감, 신뢰감, 사회자본 등 비공식적 통제요인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 경찰에 대한 만족도·신뢰감

자료: 치안정책연구소, 2015; 이상열, 2016, 재인용.

1) 범죄피해경험 모델

범죄피해경험 모델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개인의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이나 실제적인 범죄율의 결과에 기인한다(김지선, 2004). 범죄피해경험 모델은 직접 범죄피해경험 모델과 간접 범죄피해경험 모델로 구분된다. 직접 범죄피해경험 모델은 자신이 과거에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범죄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간접 범죄피해경험 모델은 자신이 아닌 주변의 지인들이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범죄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박철현, 2012). 즉, 직접 범죄피해경험은 직접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는

입장이며, 간접 범죄피해경험은 가까운 이웃, 지인 등이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거나 언론 등에 보도된 범죄사건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차훈진, 2007).

범죄피해경험 모형은 개인이 경험한 직접적 피해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인터넷, SNS 등의 정보매체로 습득한 간접적 피해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피해경험모형에 근거하면 범죄두려움은 대개 직접적 범죄피해로 형성되지만, 간접피해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Skogan and Maxfields, 1981; 박중훈, 이경재, 이성우, 2018).

2) 범죄취약성 모델

범죄취약설 모델은 자기 자신이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취약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범죄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이다(Bennett & Flavin, 1994; 조상현, 박외병, 2017). 범죄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Hale(1996)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의 두려움을 더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연약하여 가해자의 공격에 방어할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주, 윤우석(2013)은 범죄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적, 사회적으로 대응능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주장했으며, 류준혁(2011)은 범죄취약성 모델은 성별, 소수민족, 하층민, 저학력층, 연령 등과 범죄두려움을 고찰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매우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사회적 취약성의 논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범죄피해에의 노출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범죄율이 높은 동네에 거주하는 것은 종종 범죄피해의 잠재력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집을 보호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결여된 개인들은 높은 사회적 취약성을 느낄 것이다(김성언, 2013).

3) 지역무질서 모델

지역무질서 모델은 개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으로서 지역의 무질서가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모델로 무질서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거주 지역주민들이 무질서한 환경하에서 범죄의 두려움을 더 느낀다고 보는 견해이다(Covington & Taylor, 1991; 장철영, 2014). 지역무질서 모델은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

의 무질서를 목격하는 이들은 거주하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범죄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이다(황의갑, 2015). 지역무질서모델은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로 구분된다. 사회적 무질서는 약물중독자, 주취자, 거리의 불량배, 불량청소년, 매춘 등 주로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된 무질서이며, 물리적 무질서는 버려진 폐차, 낙서, 폐가, 쓰레기 등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무질서를 의미한다(조상현, 박외병, 2017).

4) 사회통합모델

사회통합모델은 Shaw & Mckay의 사회해체이론에 근간을 둔 모델로서 낮은 소득 수준, 높은 인구의 이동률, 높은 가정의 해체율, 그리고 다양한 인종 구성 등으로 대표되는 구조적으로 해체된 지역사회와 이로 인한 지역 구성원들 간의 사회유대 약화 또는 통합력의 약화 즉, 지역사회의 해체로 인해 지역 구성원들은 낮은 사회통제력을 인식하게 되고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범죄두려움이 증가한다고 본다(Taylor & Hale, 1986; 이상열, 2016). 사회통합모델은 범죄피해경험 모델과 범죄취약성 모델이 주로 개인적 요소에만 초점을 가지는 것임에 반해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모델이다(Katz, Webb & Armstrong, 2003; 조상현, 박외병, 2017).

5)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은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 범죄피해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으며, 경찰활동 즉, 공식적 사회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에서는 경찰이 범집행자이기 보다는 대민봉사자로서 대민접촉을 증가하고, 지역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범죄의 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장철영, 2014).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을 통해 범죄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경찰이 활동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경찰과 자주 접촉할 기회가 증가한다. 둘째, 경찰이 시민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증가된다. 셋째,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가 강화된다. 넷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전략 실행으로 인해 범죄와 무질서가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두려움을 완

화 내지는 감소시킬 수 있다(김연수, 2010).

3. 선행연구의 검토

박종훈, 이경재, 이성우(2018)는 2006년, 2011년, 2014년 서울 서베이 자료를 통해 개인특성과 함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변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공간특성인 밤거리 보행, 외국인 비율, 이혼율은 범죄두려움과 정(+)의 인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30대 사이의 비교적 젊은 여성, 10대 남성 등 청소년과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 연령과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 제거 방안이 필요하며, 공간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조상현, 박외병(2017)은 구체적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피해 모델, 범죄취약성 모델, 지역무질서 모델, 사회통합 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구체적 범죄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범죄피해 모델, 범죄취약성 모델, 지역무질서 모델, 사회통합 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델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제시한 모델은 범죄취약성 모델, 지역무질서 모델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범죄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식적인 통제 기관 등 상호협력력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구교태(2016)는 범죄피해 두려움의 어떠한 요인들이 부정적 인식에 관여하는 자를 살펴보고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질서, 범죄피해경험, 범죄뉴스 노출, 범죄관련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간접적 경험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뉴스 노출 정도를 제외한 세 변인들이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피해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정부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열(2016)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인 비공식적 통제, 지역주민 유대와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 경찰활동인식과 경찰신뢰에 대해 분석한 결과 비공식적 통제, 지역주민유대, 범죄피해경험 등 기존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두려움의 연구와 같이 장애인의 경우에도 해당 변수들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강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제언으로 장애인 가정 및 시설에 대한 순찰강화를 비롯하여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장애인 지원 필요, 지역사회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조상현, 정의롭(2015)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환경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이웃유대와 범죄두려움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지역무질서와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에게 알맞은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허경미(2011)는 그동안 오늘날 농촌범죄의 발생은 농촌의 목가적인 환경 및 동경, 도시 보다는 안전할 것이라는 이상적인 희망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식, 문화 등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촌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개인적 요인 등 복합적인 범죄 발생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범죄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비롯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대책의 마련, 지역무질서 제거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1) 설문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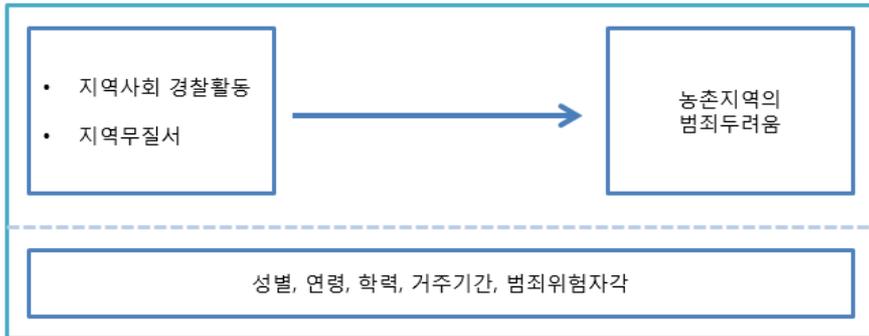
〈표 2〉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비고
범죄위험 자각	개인적 범죄피해자 가능성	곽대경, 송일호(2012) 조은경(2003)
	범죄발생 가능성 (개인)	이강형(2013)

	농촌 지역 범죄로부터 안전 정도	이강형(2013)
지역사회경찰활동	범죄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	조상현, 정의롭(2015) 장안식(2015)
	경찰의 순찰활동 등 방법활동	조상현, 정의롭(2015)
	범죄신고시 반드시 범인 검거 여부	박순진(2017) 장안식(2015)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관심도	이강형(2013)
	주민들의 경찰활동 협조 및 신뢰 여부	이상열(2016) 장안식(2015)
지역무질서	거주지역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조상현, 정의롭(2015)
	거주지역 노숙자, 불량배 거주 여부	조상현, 정의롭(2015)
	거주지 주변 쓰레기 등 무단 방치	노성훈, 조준택(2014)
	거주지 주변 빈집 및 빈터 여부	차훈진(2007)
	거주지 주변 어둡고 후미진 곳 여부	조상현, 박외병(2017) 차훈진(2007)
	거주지 주변 야간시간대 취객 여부	차훈진(2007)
범죄피해두려움	집을 비운사이 도둑 침입 두려움	구교태(2016)
	집밖에서 소매치기, 날치 등 두려움	구교태(2016)
	강도침입 가족위협 폭행 두려움	구교태(2016)
	집밖에서 강도피해 두려움	차훈진(2007)
	낯선사람으로부터 폭행 두려움	차훈진(2007)
	평소 현금 소지 여부	곽대경,송일호(201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가족수	연구자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종속변수는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으로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지역 사회 경찰활동과 지역무질서 등으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그리고 범죄위험자가 등으로 한정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충청북도 농촌지역 거주 주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32명을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3.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1) 범죄두려움 (Cronbach's $\alpha = .898$)

농촌 지역의 범죄두려움은 총 6개의 문항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2) 독립변수

(1) 지역사회경찰활동 (Cronbach's $\alpha = .870$)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총 6개의 문항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2) 지역무질서 (Cronbach's $\alpha = .805$)

지역무질서는 총 6개의 문항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무질서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더미화하여 재코딩하였다. 연령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1) 고등학교 졸업 미만,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 졸업, 4) 대학교 졸업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거주기간은 1) 5년 미만, 2) 5~10년, 3) 10~15년, 4) 15~20년, 5) 20년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범죄위험자각은 1) 매우 안전함, 2) 안전함, 3) 보통, 4) 안전하지 않음, 5) 전혀 안전하지 않음의 응답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과 독립변수인 지역사회경찰활동 및 지역무질서 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의 정도와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실시한 후,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총 3번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모형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모형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형3에서는 모든 변인을 투입하여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설명력을 통해 해당 변인의 영향력을 상호비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도구는 STATA 13.0 통계패키지이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전체 표본은 132명(100.0%)이며, 성별은 남자가 59.1%(78명)로 여자의 40.9%(54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었다. 연령은 20대가 60.6%(80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 이상이 16.7%(22명), 40대가 15.9%(21명), 그리고 30대가 6.8%(9명)의 순으로 제시되어 대체로 연령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8.6%(51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이 37.9%(50명), 고등학교 졸업 미만이 13.6%(18명), 그리고 전문대 졸업이 9.9%(13명)의 순으로 제시되어 대체로 학력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132	100.0
성별	남자	78	59.1
	여자	54	40.9
연령	20대	80	60.6
	30대	9	6.8
	40대	21	15.9
	50대 이상	22	16.7
학력	고등학교 졸업 미만	18	13.6
	고등학교 졸업	51	38.6
	전문대 졸업	13	9.9
	대학교 졸업 이상	50	37.9
거주 기간	5년 미만	34	25.8
	5~10년	15	11.4
	10~15년	30	22.7
	15~20년	17	12.9
범죄 위험 자각	20년 이상	36	27.3
	매우 안전함	1	0.8
	안전함	13	9.9
	보통	87	65.9
자각	안전하지 않음	14	10.6
	전혀 안전하지 않음	17	12.9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27.3%(3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년 미만이 25.8%(34명), 10~15년이 22.7%(30명), 15~20년이 12.9%(17명), 5~10년이 11.4%(15명)의 순으로 제시되어 대체로 거주기간이 긴 편으로 나타났다. 범죄위험자각은 보통이 65.9%(8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혀 안전하지 않음이 12.9%(17명), 안전하지 않음이 10.6%(14명), 안전함이 9.9%(13명), 그리고 매우 안전함이 0.8%(1명)의 순으로 제시되어 대체로 농촌에 대한 범죄위험자각은 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은 평균 2.64(표준편차=0.83)로 나타나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체로 범죄두려움이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중 지역무질서는 평균 2.69(표준편차=0.69)로 제시되어, 지역무질서정도가 다소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은 평균 3.13(표준편차=0.65)로 제시되어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다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변수들을 평균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무질서, 그리고 범죄두려움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4〉 기술분석 결과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범죄두려움	132	2.64	0.83	1.0	5.0
독립변수	지역사회경찰활동	132	3.13	0.65	1.0	4.5
	지역무질서	132	2.69	0.69	1.0	4.7

3.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여자가 평균 2.76(표준편차=0.96)으로 남자의 평균 2.56(표준편차=0.72)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다소 높았으나, t값 1.38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연령은 30대가 평균 3.17(표준편차=0.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 이상이 평균 2.91(표준편차=0.75), 20대 가 평균 2.56(표준편차=0.8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40대가 평균 2.45(표준편차=0.6)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F값 2.6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연령에 따라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평균 2.69(표준편차=0.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미만이 평균 2.68(표준편차=0.87), 전문대 졸업의 평균이 2.63(표준편차=0.7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평균 2.59(표준편차=0.84)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F값 0.1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평균 2.93(표준편차=0.8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20년이 평균 2.87(표준편차=0.57), 20년 이상이 평균 2.59(표준편차=0.91), 10~15년은 평균 2.56(표준편차=0.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5~10년이 평균 2.01(표준편차=0.75)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대체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F값 3.9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위험지각은 전혀 안전하지 않음이 평균 2.98(표준편차=1.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전하지 않음이 평균 2.80(표준편차=0.75), 보통의 평균 2.63(표준편차=0.74), 안전함이 평균 2.23(표준편차=0.9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매우 안전함이 평균 1.00(표준편차=0.00)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대체로 범죄위험지각을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F값 2.7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범죄위험지각에 따라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범죄두려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78	2.56	0.72	1.38
	여자	54	2.76	0.96	
연령	20대	80	2.56	0.87	2.68*

	30대	9	3.17	0.89	
	40대	21	2.45	0.60	
	50대 이상	22	2.91	0.75	
학력	고등학교 졸업 미만	18	2.68	0.87	0.12
	고등학교 졸업	51	2.69	0.84	
	전문대 졸업	13	2.63	0.79	
	대학교 졸업 이상	50	2.59	0.84	
거주기간	5년 미만	34	2.93	0.80	3.95**
	5~10년	15	2.01	0.75	
	10~15년	30	2.56	0.77	
	15~20년	17	2.87	0.57	
	20년 이상	36	2.59	0.91	
범죄위험 개인자각	매우 안전함	1	1.00	0.00	2.74*
	안전함	13	2.23	0.98	
	보통	87	2.63	0.74	
	안전하지 않음	14	2.80	0.75	
	전혀 안전하지 않음	17	2.98	1.03	

4. 상관관계분석

아래의 <표 6>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인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범죄위험자각, 지역무질서, 지역사회경찰활동, 그리고 범죄두려움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의 판단 기준인 0.9이상의 상관계수를 넘는 변수들이 없었으며, 대체로 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0.05 내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종속변수인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범죄위험자각은 정(+)적 영향을, 독립변수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부(-)적 영향을, 지역무질서는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범죄위험자각이 높을수록,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적을수록, 지역무질서가 높을수록,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6〉 상관관계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1	1							
2	0.102	1						
3	0.081	0.325***	1					
4	0.085	0.181*	0.074	1				
5	0.121	-0.152	-0.043	-0.116	1			
6	0.156	0.002	0.046	-0.008	-0.156	1		
7	-0.062	-0.155	-0.188*	-0.115	0.062	-0.297***	1	
8	-0.120	0.110	-0.050	-0.059	0.246**	-0.209*	0.529***	1

주1) 1. 성별, 2. 연령, 3. 학력, 4. 거주기간, 5. 범죄위험자각, 6. 지역사회경찰활동, 7. 지역무질서, 8. 범죄두려움

주2) ***p< 0.001, **p< 0.01, *p< 0.05

5.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독립변수들이 실증적으로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각각의 설명 모형들 간의 영향력의 정도를 상호비교하기 위해 해당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총 3번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설명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7>이다.

분석결과, 모형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그리고 범죄위험자각으로 구성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 변량의 5.6%를 설명하고 있으며, 범죄위험자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범죄위험자각이 높을수록,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2.55로 전체 모형은 유의미하였다.

모형2에서는 앞선 모형1의 변인들과 함께,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포함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 변량의 7.5%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1과의 차이에서는 1.9%의 설명력을 보였다. 앞선 모형1과 동일하게 범죄위험자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범죄위험자각이 높을수록,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는 제기되었으며, F값 2.77로 전체 모형은 유의미

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변인을 포함하는 모형3에서는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 변량의 32.4%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2와의 차이에서는 24.9%의 설명력을 보였다. 통제변수에서는 연령과 범죄위험자각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독립변수에서는 지역무질서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상호비교해보면, 지역무질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 = 0.531$), 다음으로 연령이 높았으며($\beta = 0.183$), 그리고 범죄위험자각($\beta = 0.180$)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즉, 지역무질서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위험자각이 높을수록,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9.98로 전체 모형은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개별 모형들을 설명력을 중심으로 상호비교해보면, 지역무질서 요인이 24.9%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5%로 높았으며,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이 1.9%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7〉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구분	Model1			Model2			Model3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	-0.152	0.146	-0.091	-0.115	0.146	-0.068	-0.132	0.124	-0.078
연령	0.090	0.064	0.130	0.090	0.063	0.130	0.127*	0.054	0.183
학력	-0.065	0.067	-0.088	-0.060	0.066	-0.081	-0.005	0.057	-0.007
거주기간	-0.051	0.047	-0.095	-0.052	0.046	-0.096	-0.024	0.040	-0.045
범죄위험자각	0.230**	0.087	0.230	0.207*	0.087	0.207	0.179*	0.074	0.180
지역사회경찰활동				-0.209	0.110	-0.163	-0.015	0.098	-0.011
지역무질서							0.641***	0.093	0.531
N		132			132			132	
adj-R2		0.056			0.075			0.324	
F		2.55*			2.77*			9.98***	

*** $p < 0.001$, ** $p < 0.01$, * $p < 0.05$

V. 결론 및 제언

범죄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다. 일상생활에서 범죄 피해를 당할 곳 같은 두려움이 발생한다면 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범죄 피해 경험이나 혹은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범죄피해 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등에 따라 개인마다 범죄두려움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항상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범죄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박현수, 2018).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 감소,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참여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Stafford, Chandola, & Marmot, 2007; 최동주, 이모숙, 2016).

범죄두려움은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통제와 비공식적인 통제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 경우 범죄두려움은 통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두려움이 발생하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장안식, 정혜원, 박철현, 2011).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농촌에 대한 범죄위험자각은 안전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기술분석 결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무질서, 범죄두려움 순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범죄위험자각이 높을수록,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적을수록, 지역무질서가 높을수록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결과 지역무질서가 높을수록, 범죄위험자각이 높을수록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농촌지역의 범죄두려움 감소 및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지역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유발 환경개선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역무질서 모델은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사회적 무질서 보다는 물리적 무질서 즉, 버려진 폐차, 공폐가, 쓰레기 등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범죄처벌법이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 경미한 무질서 사범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내의 무질서 억제이다.

셋째, 노인 맞춤형 경찰활동 및 치안전략 강화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르신 문안순찰제’의 실시와 ‘어르신 자율방범대’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강화이다. 지역 내에서 자율방범활동,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주민들의 사회불안감은 감소되고, 정책, 신뢰, 서비스관리 신뢰는 증가할 것이다(정지덕, 하정훈, 김영현, 2016). 특히, 도보순찰을 통한 시민과의 접촉 증가는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완화 내지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이 같은 도보순찰의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인력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도보순찰의 중요성 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곽동원, 2017).

다섯째, 농촌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그동안 농촌의 목가적인 환경 그리고 도시 보다는 안전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추측 등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농촌지역의 특성과 변화 등을 고려함은 물론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범죄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지현 (2019).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범죄피해 비교: 피해율과 피해심각성, 피해의 잠재계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7, 44.
- 곽동원 (2017). 제주자치경찰 조직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4호.
- 권주영 (2016).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주거지 생활권의 가로공간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교태 (2016). 범죄피해 두려움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직간접적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9(1), 113-126.
- 김성연 (2013).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24(1), 398.
- 김연수 (2010).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 (2004). 피해경험 여성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성적 괴롭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58: 217.
- 김현중, 이성우 (2011). 한국 농촌의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발생의 결정요인 분석. 농촌사회, 21(2), 144.
- 류준혁 (2011). 범죄두려움의 위계 일반화 선형 분석. 한국범죄학, 5(1), 10.
- 박기태 (2019).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 범죄두려움의 경로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주, 윤우석 (2013). 대학캠퍼스 내 대학생들의 범죄두려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0, 162.
- 박정선 (2011). 범죄두려움의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 범죄와 비행, 창간호, 80.
- 박종훈, 이경재, 이성우 (2018). 서울 시민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서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도시연구, 19(4), 112.
- 박종훈, 임형백, 이성우 (2015).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 정학보, 28(4), 193-195.
- 박철현 (2012). 사회적 무질서, 범죄피해경험, 학교에서의 폭력범죄피해의 두려움: 학교와 이웃의 두려움에 대한 사회적 무질서의 차별적 효과. 피해자학연구, 20(2), 144-145.

- 박현수 (2018).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공간 분석. *형사정책연구*, 29(2), 92.
- 이상열 (2016).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46, 141-169.
- 이성식 (2000).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137.
- 장안식 (2015). 지역의 불평등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9(3), 39.
- 장안식, 정혜원, 박철현 (2011).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형사정책연구*, 22(3), 291.
- 장철영 (2014). 경찰의 종합 체감안전도(범죄 두려움)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적 논의. *경찰학논총*, 9(1), 96-101.
- 정지덕, 하정훈, 김영현 (2016). 경찰의 민간경비 감독명령 개선방안.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제3호.
- 조상현, 박외병 (2017).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관한 설명모델의 비교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9, 212.
- 조상현, 정의롬 (2015). 지역사회환경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7(3), 299-312.
- 조일형 (2015).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4(3), 2.
- 차훈진 (200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동주, 이묘숙 (2016).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인신뢰 매개효과 분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628.
- 치안정책연구소 (2015). 2015 치안전망. 아산: 치안정책연구소.
- 허경미 (2011).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의 농촌범죄와 도시범죄의 비교. *한국경찰연구*, 10(1), 146.
- 황의갑 (2015). 지역사회의 거시환경, 무질서, 범죄피해, 사회통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집합효율성의 매개효과. *한국경찰연구*, 14(1), 276-277.

2. 외국문헌

- Auxter, D., Pyfer, J., Zitel, L., & Roth., K. (2009). *Principles and Methods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11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Bennett, R. R., & J. M. Flavin. (1994). Determinants of fear of crime: The effect of cultural setting. *Justice Quarterly*, 11(3), 357-381.

- Bridgell, Laine O'Neill. (2009). *Rurality and Crime: Identifying and explaining rural/urban difference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Convington, J. & Taylor, R. B.,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Implications of Between-and Within-Neighborhood Sources for Current Model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2(2), 231-249.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New 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ale, C. (1996). Fear of Crim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4, 79-80.
- Katz, C. M., Webb, V. J., & Armstrong, T. A. (2003). Fear of gangs: A test of alternative theoretical models. *Justice Quarterly*, 20(1), 95-130.
- Mclaughlin, Eugene & Muncie, John. (2006). *The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Pruitt, Lisa R. (2009). The Forgotten Fifth: Rural Youth And Substance Abuse, 3/9. (<http://works.bepress.com/cgi/viewcontent.cgi?article=1009&context=lisa-pruitt>).
- Rotolo, Thomas and Tittle, Charles R. (2006). Population Size, Change and Crime in U.S. Citie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2(4), 341-367.
- Skogan, W. and M. G. Maxfield. (1981).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Sage.
- Stafford, D. R. & Jinhong, Z. Chandola, T. & Marmot, M., (2007). Association between fear of crime and mental health and Physical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 2076-2081.
- Taylor, R. B. & Hale. M.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1), 151-189.

【Abstrac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in Rural Residents

Song, Jae Gu^{*} · Lee, Sang Yeol^{**}

In the meantime, it is true that the rural area has overlooked the rural area in the fear of crime because the social awareness of the safety zone is rooted in the crime. Although the city is a little higher than the rural area in fear of crime damage, the study results that about half of the residents in the rural area feel fear of crime damage must be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and it is said that measures to deal with it are urgent. You c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rime fear of rural residents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such as improving crime and crime-causing environments in rural areas.

Using STATA 13.0 statistical package,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analysis, one-way variance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derive the results.

Policy suggestions for reducing and mitigating crime fear in rural area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at causes crime and fear of crime in rural areas. Second, it is to suppress the disorder in the community through active intervention in minor disorder criminals, such as the criminal punishment law or the procedural law on the summary judgment. Third, it is to strengthen police activities and security strategies tailored to the elderly. Fourth, it is to strengthen community police activities. Fifth, the perception of rural areas is changing.

Key Words: rural areas, fear of crime, environmental improvement, police activities tailored to the elderly, change in awareness

* JungWon University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Course of Ph.D (The 1st Author)

** JungWon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Administration Professor (The Corresponding Author)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

이 대 권 · 엄 유 진 · 김 신 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

이 대 권* · 엄 유 진** · 김 신 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국의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총 640명의 설문 응답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Stata 14.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1'검정 일원배치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범죄불안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범죄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취경험에 따른 범죄불안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접근통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동체 강화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 요인 중 감시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감시가 잘 이루어질수록 범죄불안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범죄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취를 하고 있거나 자취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자취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범죄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 범죄불안감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사무국장(제1저자)

**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교신저자)

*** 국제대학교 경호보안과 교수(공동저자)

목 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
|--|

I. 서 론

최근 들어 1인 가구의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은 치킨 배달원에게서 개인연락이 오는가 하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이 혼자 사는 자취방을 창문 밖 낮선 남성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과 함께 사연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청의「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여성 1인 가구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35.4%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범죄 발생(57.0%)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는 2019년 291만4000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5년에는 388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1천699만 가구 중 539만 가구(27.2%)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 1인 가구는 187만(전체 가구의 11.3%)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대 1인 가구는 60%이상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원룸 등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2017)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의 대학생 수는 전문대 포함 약 28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 인원은 약 70만 명으로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하는 단체 ‘청년허브’의 「2016 서울청년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서울에서 청년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38.7%), 광진구(35.0%), 동작구(34.8%) 순으로 노량진과 고시촌이 몰려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앞으로도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층의 자취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준비를 위한 자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준공된 단지 및 주택은 비교적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잘 구축되어있는 반면 노후주택 및 낙후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잘 구축되지 않아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기에 거주환경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요소를 고려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로써 청년층의 범죄불안감을 낮춰주고 실질적으로 자취생활을 하는 주거자가 필요로 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요소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뿐만 아니라 혼자살고 있는 취업준비생과 더불어 미혼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거주하는데 따르는 범죄불안감과 범죄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거주환경을 고양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범죄불안감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기본원리인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의 요소가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이론은 1,2세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세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이론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공간의 방어적 성격을 증진시키고 범죄자들의 범행 성공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범죄

예방활동을 말하며 2세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이론은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장소적,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실질적 범죄예방의 전략적 범죄예방활동이라 할 수 있다(한국셉테드학회, 2015).

김영제(2007)는 방어공간이론을 기초로 CPTED의 구성요소 중 목표물의 강화, 접근통제, 감시성, 영역성의 영역으로 나누어 범죄두려움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여부를 분석하였는데 CPTED의 물리적 요소는 범죄두려움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응렬(1997)은 범죄예방은 주거자들의 공간 이용형태와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의 구조를 분석하는 CPTED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한다.

박은정, 강석진, 이경훈(2010)은 최근 준공된 단지일수록 CPTED 원리에 부합하는 요소들이 적용되어있으며 출입통제, 감시, 거주자간 공간 이용 및 교류를 통한 영역의식 등 CPTED기법을 적용을 통해 범죄불안감을 낮추고 거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현식, 박현호(2011)는 CPTED 설계의 요소로 기계적 접근통제, 기계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활동성 강화 순으로 만족도가 높고 설계수준에 따라서 거주자의 범죄불안감을 해소하거나 안전의식을 고양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박인용(2013)은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유지관리 순서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방법과 대상이 각각 상이하고 상황적 요소나 범죄의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판단된다. 이상현(2015)의 연구에서는 범죄유형별로 범죄피해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CPTED 요소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절도의 경우 활용성 증대와 영역성 강화요소, 폭행은 영역성 강화 요소, 성희롱은 감시 요소, 강간은 자연적 접근통제와 감시요소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김연수, 김종길(2015)은 사회응집(사회적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유대강화)요소가 구체적 범죄두려움 감소에 가장 중요하며 영역성 강화 요소가 일반적 범죄두려움 감소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개선을 내포하는 CPTED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범죄취약성 모델에서는 상황적 접근방법을 근거로 한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범죄가 유발할 수 있는 기회적 요인을 감소해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강은영, 2012). 범죄취약성 모델은 개인적 성향과 사회적 배경, 물리적 환경의 세 가지 관점으로 신체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장소적 취약성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적 취약성은 저항의 무력함과 외적 신체조건에 의해 범죄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여성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발생이 유도된다는 시각이며 사회적 취약성은 범죄에 대한 노출기회가 많고 사회적, 경제적 결과에 따라 범죄발생이 유도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취약성은 장소의 주변 환경 및 물리적 환경의 특성에 의해 범죄가 유도된다는 공간해석적 시각이다(구지연, 2010).

2. 범죄불안감

범죄두려움이란 범죄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느끼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정도를 나타낸다(박철현, 2005). 이러한 범죄두려움은 동네와 같은 지역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특정화되지 않은 두려움을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하고 특정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구체적 두려움이라고도 한다(정승민, 2006).

범죄불안감(Fear of Crime)이란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생명의 위협이나 두려움 또는 그것으로 인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며 1960년대 후반에 범죄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한정호, 2011).

불안감은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불안한 정서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보편적으로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 및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의 추정, 범죄나 위협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한나, 2014).

허경미, 박영주(2008)의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은 같은 장소에 범죄자와 공존한다는 환경적 영향과 그러한 환경에 속해있을 때 커진다고 말한다. 이에 범죄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범죄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우범지역을 제거하기 위해 가로등 설치 및 보행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최열 외(2003)의 연구의 결과와 같이 범죄피해 및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해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으로서의 안전설계 및 유지관리를 제시하고 환경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백은주(1991)의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이유는 주민들의 감시부족과 범죄발생 소문, 외부인에 대한 통제부족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에 CPTED의 기본원리인 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신재현 외(2012)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자연적 감시가 높아질수록 주민 유대감이 높아지고 범죄두려움이 낮아진다는 연구로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성식(2000)은 범죄불안감은 실제로 범죄피해의 경험보다는 범죄피해 위험성에 대한 노출과 위협에의 취약성, 범죄에 대한 심적 민감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박철현(2005)의 연구에서 이웃과의 친밀도는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당하려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에 범죄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며 이웃과의 친밀도가 낮으면 유대감이 떨어지고 이는 익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범죄와 범죄두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두려움의 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20대 여성의 1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준호, 2009). 이는 조은경(2003)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고 범죄발생 시에 신체적 취약성을 지각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설계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를 규정하여 인구특성학적에 따라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모형으로 먼저, 독립변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로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은 세 가지 기본원리인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범죄불안감이며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의 개념을 포함한다.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I. 성별에 따른 범죄불안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II. 자취경험에 따른 범죄불안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III. 감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IV. 접근통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V. 공동체 강화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의 목적에 알맞은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전국의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표집 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조사의 범위를 특정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컨소시엄 사이버캠퍼스의 한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목적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하여 799부 중 불성실 및 무응답 설문을 제외한 640부의 설문결과만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3. 설문지 구성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3대 기본원리인 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범죄불안감을 종속변수로 규정하였다.

1) 감시

감시는 범죄자 및 주민이나 가족의 위협에 대해서 감시를 용이하기 위한 설계개념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는 것이다(최현식, 2008).

감시는 사람의 시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창문 등을 계획하여 감시하고자 하는 자연적 감시와 진·출입구와 감시의 사각지대 등을 보안시설로 감시하는 기계적 감시, 경찰이나 경비원의 순찰 등에 의한 조직적 감시로 구분된다(한국

셉테드학회, 201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미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사용된 문항 가운데 본 연구에 있어 변인에 맞게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감시에 대한 요인은 최연준(2015), 장희옥(2016), 김영제(2007), 이한샘(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조직적 감시를 제외한 자연적 감시와 기계적 감시의 요인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로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접근통제

접근통제 원리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을 봉쇄하여 적법한 사용자들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잠재적인 범죄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보호지역에 대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중대, 2015).

접근통제는 수목 식재와 보행로 설치 등을 통하여 일정한 공간으로 접근을 통제하거나 유도하는 자연적 접근통제와 자물쇠나 출입 차단기와 같은 보안 설비에 의한 기계적 접근통제, 경비원과 같은 순찰인력이나 자율방범대 같은 지역사회 조직에 의한 조직적 접근통제로 구분된다(한국셉테드학회, 2015).

본 연구에서 접근통제에 대한 요인은 조직적 접근통제를 제외한 자연적 접근통제와 기계적 접근통제로 최연준(2015), 장희옥(2016), 김영제(2007), 이한샘(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접근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공동체 강화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동일한 장소를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사용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 책임의식 등을 통해 지역에 출입하는 낯선 사람을 감시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인한 범죄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한국셉테드학회, 2015).

성희자, 전보경(2006)은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라영(2009)은 공동체 의식에 대해 개인의 귀속의식,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 참여의식, 장소정주성 등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 강화에 대한 요인은 김영제(2007), 이한샘(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강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4) 범죄불안감

범죄불안감이란 현재의 상황이 아닌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미리 염려할 때 나타나는 불안한 정서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을 추정하는 것으로 불안과 걱정의 정도를 개념화할 수 있다(방영호, 2015).

김연수(2010)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인지적 위협 및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범죄 및 안전에 대하여 느끼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두려움은 구체적 범죄를 상정하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동현, 2014).

본 연구에서 범죄불안감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에 관한 요인은 이도선(2011), 정아름(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타당도 및 신뢰도

가설검증에 앞서 사용된 설문지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고 주축요인추출과 베리맥스(Varimax)회전방식을 적용하였다. KMO(Kaiser-Meyer-Olkin)값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7 이상인 경우 양호한 것으로 본다. Battlet의 구형성검정은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한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p값이 기준치인 .005보다 낮으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음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문항별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5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적재량이 .5 미만이거나 중복 요인적재량을 보이는 문항을 제거한 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문항 간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적 합치도를 검사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결과 각 요인들은 요인 적재값이 .5 이상이고 Cronbach's α 계수도 .6 이상으로 기준치에 충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요인	문항	요인적재값	Cronbach's α	KMO	Bartlett 검증
CPTED	1	.636	.707	.836	$\chi^2=2368.53$ df=105 p=.000
	2	.645			
	3	.656			
	4	.742			
	6	.545	.741		
	7	.630			
	8	.749			
	9	.676			
	10	.642	.656		
	11	.694			
12	.791				
범죄 불안감	13	.744	.815	.882	$\chi^2=3762.08$ df=45 p=.000
	18	.754			
	19	.723			
	20	.741			
	21	.706			
	22	.830			
	23	.898			
24	.899				
25	.851				

4.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a 14.2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

째,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들의 범죄불안감에 대한 성별, 자취경험별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 일원배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지역과 비율로는 서울(6.7%), 경기(12.2%), 강원(2.7%), 충청(34.2%), 전라(25.3%), 경상(17.8%), 제주(1.1%)로 나타났다.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나이, 자취경험으로 구분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339	53
	여성	301	47
나이	21세 이하	103	16.1
	22세 ~ 23세	241	37.7
	24세 ~ 25세	223	34.8
	26세 ~ 27세	65	10.2
	28세 이상	8	1.2
자취경험	없다	278	43.4
	있다	362	56.6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 339명(53%), 여학생 301명(47%)이며, 나이는 21세 이하가 103명(16.1%), 22세 ~ 23세가 241명(37.7%), 24세 ~ 25세가 223명(34.8%), 26세 ~ 27세가 65명(10.2%), 28세 이상이 8명(1.2%)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취중이거나 자취경

험이 있는 학생은 362명(56.6%)이며 자취경험이 없는 학생은 278명(43.4%)으로 나타났다.

2.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관하여 그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성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	범죄불안감
감시	1			
접근통제	.475***	1		
공동체 강화	.282***	.297***	1	
범죄불안감	-.200***	-.147***	-.172***	1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와 접근통제 간의 상관계수는 .475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와 범죄불안감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가 높아질수록 범죄불안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불안감 차이

1) 성별에 따른 범죄불안감 차이

성별에 따른 범죄불안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성별에 따른 범죄불안감 차이

구분	빈도(N)	평균(M)	표준편차(SD)	t값	p	
범죄불안감	남성	339	2.023	.890	-11.727	.000***
	여성	301	2.794	.755		

* p<.05, ** p<.01 *** p<.001

범죄불안감의 t값은 -11.727로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각 범죄불안감의 평균값은 2.02, 2.7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많은 범죄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범죄불안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2) 자취경험에 따른 범죄불안감 차이

자취경험에 따른 범죄불안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자취경험에 따른 범죄불안감 차이

구분	빈도(N)	평균(M)	표준편차(SD)	t값	p	
범죄불안감	자취경험 없음	278	2.338	.824	-1.160	.246
	자취경험 있음	362	2.422	.976		

* p<.05, ** p<.01 *** p<.001

자취경험에 따른 범죄불안감의 평균값은 2.33, 2.42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범죄불안감의 t값은 -1.160으로 자취경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취경험에 따른 범죄불안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4.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1) 감시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감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는 <표 6>와 같이 나타났다. 감시(B=-.200)의 t값은 -4.68이고 통계적 유의수준 안에

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중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수록 범죄불안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독립변수인 감시가 종속변수인 범죄불안감에 대한 4.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6〉 감시와 범죄불안감 단순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SE	Beta		
범죄불안감	감시	-.214	.045	-.200	-4.68***
	상수	3.044	.143	-	21.18***
N = 640 R2 = .043 F = 21.89***					

* p<.05, ** p<.01 ***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접근통제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접근통제가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정 결과는 <표 7>와 같이 나타났다. 접근통제(B=-.147)의 t값은 -3.44이고 통계적 유의 수준 안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접근통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중 접근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수록 범죄불안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독립변수인 접근통제는 범죄불안감 전체변량의 2.1%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접근통제와 범죄불안감 단순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SE	Beta		
범죄불안감	접근통제	-.157	.045	-.147	-3.44***
	상수	2.823	.133	-	21.17***
N = 640 R2 = .021 F = 11.81***					

* p<.05, ** p<.01 ***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3) 공동체 강화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강화가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는 <표 8>와 같이 나타났다. 공동체 강화(B=-.172)의 t값은 -4.02이고 통계적 유의수준 안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동체 강화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중 공동체 강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수록 범죄불안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독립변수인 공동체 강화는 범죄불안감 전체 변량의 2.9%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공동체 강화와 범죄불안감 단순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SE	Beta		
범죄불안감	공동체 강화	-.168	.042	-.172	-4.02***
	상수	2,862	.123	-	23.11***
N = 640 R2 = .029 F = 16.14***					

* p<.05, ** p<.01 *** p<.001 ,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4)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4에서는 독립변수인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 중 감시($\beta = -.157$)와 공동체 강화($\beta = -.11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접근통제($\beta = -.044$)는 유의하지 않았다. 회귀모형은 F값이 9.69,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변량 5.1%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5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과 나이, 자취경험 중 성별($\beta = -.849$)과 자취경험($\beta = -.21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나이는 24세~25세($\beta = -.221$) 외에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의 기준은 남성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범죄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의 기준은 21세 이하로 24세~25세의 나이대가 범죄불

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취경험의 기준은 자취경험 없음으로 자취경험이 있는 경우 범죄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27.8,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변량 19.2%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델인 모델 6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감시, 접근 통제, 공동체 강화를 투입한 결과 감시($\beta = -.12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접근통제($\beta = -.017$)와 공동체 강화($\beta = -.067$)는 범죄불안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통계적 유의수준 안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beta = .795$)의 범죄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고 21세 이하보다 24~25세($\beta = .209$)의 나이대가 범죄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취 중이거나 자취를 경험해본 사람($\beta = .162$)이 자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보다 범죄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20.78,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범죄불안감에 대한 전체변량 21.2%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범죄불안감 다중회귀분석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감시	-.214*** (.045)			-.157** (.049)		-.125** (.044)
접근통제		-.157*** (.045)		-.044 (.049)		-.017 (.043)
공동체강화			-.168*** (.042)	-.115* (.044)		-.067 (.040)
성별 i. 여성					.849*** (.073)	.795*** (.074)
I. 22세~23세					.138 (.092)	.135 (.091)
II. 24세~25세					.221* (.104)	.209* (.102)
III. 26세~27세					.088 (.141)	.085 (.138)
IV. 28세 이상					.305 (.224)	.362 (.240)

자취 경험	i. 있음				.216** (.065)	.162* (.066)
상수	3.044*** (.143)	2.823*** (.133)	2.862*** (.123)	3.320*** (.180)	1.721*** (.096)	2.406*** (.209)
관찰값	640					
R-squard	.040	.022	.030	.056	.199	.223
Adj R-squard	.038	.020	.028	.051	.192	.212
F-test	21.89	11.81	16.14	9.69	27.80	20.78
prob>F	.000***	.000***	.000***	.000***	.000***	.000***

* p<.05, ** p<.01, ***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독립변수로 설정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가 범죄불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앞서 제시한 가설을 선행연구와 각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에 따른 범죄불안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범죄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이윤희, 2007; 조은경, 2003; 한정호, 2011)에서도 남성보다 여성들의 범죄불안감이 크다는 연구결과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성별, 나이가 신체적 취약성의 요소를 대표하는 것으로 성(性)에 대한 범죄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성보다 여성은 신체적 근력이 부족하여 범죄 공격에 대응하거나 저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취경험에 따른 범죄불안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취 중이거나 자취를 경험해본 학생과 자취를 해보지 못한 학생간의 범죄불안감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범죄불안감은 자취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대학생 남녀노소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자취를 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범죄불안감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윤상연(2017)은 1인 가구 밀집지역, 특히 도심지역의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치안 역량 집중이 필요하며 사후적인 개입이 아닌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거 환경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감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중 감시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범죄불안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감시의 요소가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홍동진, 2009; 조성희, 강혜경, 2000)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창문과 건물 근처의 조명, 조경의 배치로 가시권을 최대화하여 범죄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기회와 범죄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접근통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중 접근통제의 영역이 강화될수록 범죄불안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적 접근통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이도선, 2011; 원선영, 2010; 최현식, 박현호, 2011)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낙후된 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인 및 거주자의 출입이 잦을 수 있고 접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접근통제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은 주거자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다를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물리적 환경을 고양하는 것으로 범죄불안감을 낮추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섯째, 공동체 강화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중 공동체의 영역이 강화되고 잘 이루어질수록 범죄불안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강화에는 영역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감시와 접근통제를 위한 물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을 포함한다. 박철현(2005)의 연구에서는 이웃과의 친밀도는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당할 경우에 도움을 바로 청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공동체가 강화될수록 범죄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김연수, 김종길(2015)은 영역성 확보 요소가 일반적 두려움 감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성과 같이 범죄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학생의 경우 자취를 고려할 때에 동거자 및 알고지내는 이웃을

고려하여 자취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방법대 및 순찰, 이웃연대활동을 통하여 공동체를 강화하는 등 범죄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증대될 필요가 요구된다.

2. 결론

본 연구는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취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진행한 연구로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라는 세 개의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범죄불안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범죄불안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범죄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취경험에 따른 범죄불안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중 감시 요인이 강화되고 잘 이루어질수록 범죄불안감이 낮아진다.

넷째, 접근통제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중 접근통제의 영역이 강화될수록 범죄불안감이 낮아진다.

다섯째, 공동체 강화는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중 공동체의 영역이 강화되고 잘 이루어질수록 범죄불안감이 낮아진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 요인 중 감시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감시가 잘 이루어질수록 범죄불안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범죄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취를 하고 있거나 자취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자취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범죄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취중이거나 자취경험이 있는 여성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요소 중 감시의 요인이 범죄불안감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감시 요인의 하위요소인 자연적 감시, 기계적 감시, 조직적 감시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자취환경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방법대 순찰활동증가 및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스템 구축 등의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을 적용한 물리적 보안 영역의 신기술(박준석, 이대권, 2019)과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1인 가구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적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지만 무작위표집 또는 전수조사가 아니며 조사 범위를 특정 집단으로 한정하고 온라인 서베이를 통한 설문자료수집방법으로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종속변수인 범죄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포함된다. 셋째로는 독립변수의 수가 적기에 연구의 분석이 심층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실증연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 대학생집단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고령자 집단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은영 (201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성폭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Vol.26 pp.13-23.
- 고준호 (2010). 우리나라 범죄피해의 원인에 대한 연구. 제1회 전국 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pp.185-232.
- 구지연 (2010). 도심 상업지역 범죄취약성에 관한 연구: 물리적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한국도심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김동현 (2014). 도시재생구역이 거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2015).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김종길 (2015). CPTED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천시 남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50, pp.3-33.
- 김영제 (2007). CPTED와 지역 범죄 통제 거버넌스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pp.25-61.
- 김종현 (2015). 공동주택의 CPTED 적용에 대한 만족도 분석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석, 이대권 (2019).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산업보안 연구동향 분석.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8호.
- 박인용 (2013). CPTED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 강석진, 이경훈 (2010). 아파트단지에서 셉테드 구성요인과 범죄 및 불안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6권 제5호, p.111.
- 박철현 (2005). 범죄피해경험, 이웃통합 그리고 범죄두려움. 피해자학연구, 31(1), pp.51-77.
- 방영호 (2015). 대학 캠퍼스 내 외부공간의 환경특성과 여성 야간 범죄불안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주 (1991). 고층 집합주거에서 범죄불안심리와 환경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대구시

- 사례대상자를 중심으로 산업기술연구지, 19, pp.119-134.
- 성희자, 전보경 (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 pp.149-170.
- 신재현, 김상운 (2012). 자연적 감시의 확보가 주민간의 유대감을 통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지, 제48호, pp.141-172.
- 윤상연 (2017).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범죄현황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의 통제효과. 한국셉테드학회, 2017 추계 공동 학술세미나.
- 원선영 (2010).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주거단지의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도선 (2011). CPTED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관교신도시 CPTED 적용 평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러영 (2009).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의식과 외부 공간구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현 (2015). 공동주택 주민들의 CPTED 인식이 범죄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 (2000).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pp.133-159.
- 이윤호 (2007). 피해자학. 박영사.
- 이한나 (2014). 도시 낙후지역의 가로경관이 여성 성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한샘 (2015).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거주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욱 (2016).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공동체의식이 주거환경 만족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민 (2006). 지역특성과 경찰활동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아름 (2016). 커뮤니티 활성화가 주거지의 범죄 예방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동작구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 강혜경 (2000). 주거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1(1), pp.45-56.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9(1), pp.1-21.
- 최연준 (2015). 안심마을 시범사업 거주민들의 CPTED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수원시 송죽동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열, 김효숙, 임하경 (2003). 공동주택의 범죄발생 실태 및 범죄불안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

학교 도시문제연구소, 도시연구집, 15.

최응렬 (1997). 주거침입절도 방지를 위한 방법대책에 관한 연구:CPTED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 pp.91-133.

최현식 (2008). 공동주택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박현호 (2010). CPTED 설계요소에 대한 공동주택주민의 만족도 인식:CPTED 적용 수준별 집단과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의 교호작용효과.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2, pp.231-258.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 (2015). 셉테드 원리와 운영관리. 박영사.

한정호 (2011). 커뮤니티의식 증진을 위한 공동주거단지 외부공간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동진 (2008). 범죄불안감 감소를 위한 환경설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기타

교육부(2017). www.moe.go.kr. 2019. 11.14. 검색.

국회입법조사처(2017). www.nars.go.kr. 2019. 11.14. 검색.

청년허브(2016). 2016 서울청년인포그래픽스(youthhub.kr/hub).

통계청(2019). kostat.go.kr. 2019. 11.14.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CPTED on Fear of
Crime**
– Focus on college students –

Lee, Dae Kwon^{*} · Aum, Yoo Jin^{**} · Kim, Shin 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CPTED) on crime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country. Stata 14.2 statistics program was used using a total of 640 questionnaire responses as the final analysis data.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s a result of conducting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crosstabulation,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confir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crime anxiety by gender. It was found that women had higher anxiety in crime than men.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crime anxiety according to trace experience. Third, surveillanc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crime anxiety of college students. Fourth, access control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crime anxiety of college students. Fifth, strengthening the community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crime anxiety of college students.

*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Director (The 1st Author)

**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Instructor (The Corresponding Author)

*** KookJe University Department of Security Professor (The Co-Author)

In addition, i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sider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ly the monitoring factor among the monitoring, access control, and community strengthening facto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t was found that women had higher crime anxiety than men, and college students who had traces or had trace experience had higher crime anxiety than college students without trace experience.

Key Words: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CPTED), Surveillance, Access control, Community Strengthening, Crime anxiety

민간경비업의 경험 마케팅이 고객태도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진환

민간경비업의 경험 마케팅이 고객태도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진환*

[국문초록]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경험마케팅이 고객태도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한 민간경비회사 10곳을 방문하여 이용 고객명부를 기본 자료로 하여 인터넷 모바일 설문조사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모바일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작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회수되지 않거나 극단치가 있는 20부를 제외한 총 300부를 최종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SPSS WIN 18.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영향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경험마케팅은 고객태도에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경험마케팅은 고객만족(서비스 만족)에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험마케팅의 하의변인인 관계적 경험과, 감성적 경험은 고객만족의 하의변인인 상품만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으며, 고객태도는 고객만족에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고객태도는 경험마케팅과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주제어: 경호, 민간경비업, 경험마케팅, 고객태도, 고객만족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부교수(제1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I. 서 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경영의 중심적 과제는 물질 재화나 서비스 제품들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개성화되어 가는 고객들의 욕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김영기, 1996). 또한, 효율성을 중시하던 소비자 욕구는 차별성과 감성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과 편익을 내세우던 전통적 마케팅에서 소비자를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소비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적 마케팅(experience marketing)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험을 마케팅 활동의 새로운 틀의 기준으로 삼는 접근은 기존 소비자 행동에서 인지, 태도, 행동의 각 차원을 근거로 하고 이에 관계적 차원과 감각적 차원을 보완하여 감각(sense), 감성(feel), 인지(think), 행동(act), 그리고 관계(relate)의 경험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Schmitt, 1999).

특히, 인적 의존도가 높고 종사원과 고객의 접점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산업의 경우 품질평가의 결정적 요소는 고객을 대하는 조직구성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관리는 기업경영의 성과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오정학, 육풍림,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간경비조직은 인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서비스 품질이 평가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된다는 점(김진환, 2009;

이삼기, 김건희, 2017)을 생각할 시 경험 마케팅과 고객태도, 고객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민간경비조직은 국민의 안전욕구를 시장의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의뢰인 개인 비용부담을 통해 스스로 안전서비스를 제공 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개인의 생명과 재산, 범죄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괄목할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그에 따른 개선점이나 문제점 등이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최승희, 이재민, 2018). 그 중 대표적인 문제로 민간경비업체 대부분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경비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문제 및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과 가격덤핑 등으로 통해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를 미루어 보아 민간경비업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으며(백승민, 이영석, 이세환, 2019),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시에는 경비업 허가취소를 당하므로 덤핑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경비업의 영업실적문제는 인적자원의 서비스개선 및 수요자의 경험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동시에 고객태도와 고객만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이제는 크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많은 연구자들은 민간경비 조직과 조직유효성 등을 결과변수로 설정하고 재고 방안으로는 원인변수를 직무 및 환경, 리더십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민간경비조직 내부 구성원들을 측정분석 하였을 뿐 상품선택의 결정권자인 고객에 대한 분석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배경 등을 고찰한 후 민간경비업체의 영업수익을 위하여 민간경비업의 경험마케팅을 원인변수로 설정하고 고객태도를 매개변수를 통한 결과변수인 고객만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민간경비조직 산업경영 변화와 효율적인 내부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경험마케팅

경험마케팅은 ‘느낌’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신념’을 구성하게 되고, 그 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때로는 수정되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며, 그 사실들이 축적될 때, 그 대상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게 되어 현실적인 감각 또는 관점을 만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소비자 행동에서 인지, 태도, 행동의 각 차원을 근거로 하여 이에 관계적 차원과 감각적 차원을 보완하여 경험의 유형을 제시하는 경험적 마케팅이 있는데, 이는 감각(sense), 감성(feel), 인지(think), 행동(act), 그리고 관계(relate)의 5가지 경험유형을 총체적경험(holistic experience)으로 강조하고 있는 경험적 마케팅(Schmitt, 1999)으로 설명될 수 있다(Hoffman & Novak, 1996).

(1) 감각(sense)

오감(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자극하여 소비자에게 감각적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단으로써 미학적 즐거움과 흥분, 아름다움, 만족감 등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기본적 요소들(오감)과 스타일, 등으로 설명된다(고경순, 2004).

(2) 감성(feel)

경험 제공수단들을 통해 민간경비업 이용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느낌과 정서를 유발시키는 실행 전략으로서 즐거움, 매력, 친절함, 편안함, 그리고 기분 좋음 등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용자가 경험하는 동안 어떻게 느낌을 갖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3) 인지(think)

고객들의 정교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과 상품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놀라움과 흥미유발,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사실 인지 등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4) 행동(act)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하는 경험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체, 장기적 행동 패턴,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소비자의 경험을 창조하게 하는 것이다(고정순, 2004).

(5) 관계(relate)

민간경비업과 고객 간의 유대나 연결에 대한 것이다.

2. 고객태도

고객태도란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Petty와 Cacioppo(1973)는 태도를 “그들 자신, 다른 사람들, 대상, 이슈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평가”로, Fazio(1989)는 태도를 “대상물과 평가 사이의 결합 강도”로 정의하였다.

Fishable & Ajzen(1975)은 태도를 “주어진 사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매너로 반응, 응답하는 학습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Allport(1935)는 “태도란 어떤 대상 또는 대상들의 집합에 대해 일관적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으로 정의하였다. 태도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에서는 태도를 개인 세계의 특정 측면에 관한 동기적, 감정적, 지각적, 인지적 과정의 계속된 조직화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태도란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복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Allport,1935).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태도의 개념화를 세 가지 하위요소, 즉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의 구성체를 논하고 있다(안광호, 이학신, 하영원2003).

3. 고객만족

고객만족은 소비자들의 기대치와 관련하여 그 제품의 지각된 성과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의 차이로 정의한다(Kotler, 2000). Oliver(1997)는 제품의 사용과 소비에 관련된 결과나 경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이고 호의적인 평가를 고객만족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 고객 만족도는 민간경비업 경험의 만족도 정도로 경험에 대한 평가의 미로 구분하였다.

Ⅲ. 조사도구 및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및 가설

1) 조사도구

(1) 경험마케팅

경험마케팅의 설문지는 Schmitt(1999)가 제시한 마케팅의 전략적 체험 모듈(SEM; Strategic Experience Method)의 측정변수(감각, 감성, 행동, 관계)를 선행연구(이경련, 백지희, 박의대, 2010; 고은별, 최경란, 2009)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성 하였으며, 설문지의 문항은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행동적 경험, 관계적 경험 등의 문항들로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5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고객태도

고객태도의 설문지는 선행연구(김기수, 2008; 문희강, 윤초롱, 박지은, 이유리, 2008; 임명재, 2007; Brakus, Schmitt & Zarantonello, 2009)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성 하였으며, 설문지의 문항은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등의 문항들로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5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고객만족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의 척도를 개발한 김완석과 강용주(1998)연구의 KCSI의 연구척도를 기초로 하여 이유재(2000)가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척도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성 하였으며,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5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가설설정

구조모형을 토대로 독립변수인 경험마케팅의 하위요인(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행동적 경험, 관계적 경험)과 매개변수인 고객태도(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종속변수

인 고객만족(상품만족, 서비스만족)으로 구성하였으며,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경험마케팅은 고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경험마케팅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고객태도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고객태도는 경험마케팅과 고객만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한 민간경비회사 10곳을 방문하여 이용 고객명부를 기본 자료로 하여 인터넷 모바일 질문조사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모바일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작성하였다.

표집대상자로 부터 회수된 질문지 중 무응답이나 응답이 극단치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300부를 본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300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n)	백분율(%)
총계		300	100
성별	남자	230	77
	여자	70	23
나이	10대	9	3
	20대	11	4
	30대	30	10
	40대	40	13
	50대	111	37
	60대이상	99	33

직업	전문직 대표	110	37
	전문 기술직	24	8
	공무원	7	3
	학생	15	5
	경영 관리직	30	10
	자영업	31	10
	판매, 서비스직	15	5
	주부	68	22
	월수입	100만원 미만	15
200~399만원 미만		45	14
400~599만원 미만		90	32
600~700만원 미만		77	25
1000만원 미만		73	24
경로	간판을 보고	15	5
	지인의 추천으로	100	33
	경호원이 유명해서	17	6
	홈 페이지를 보고	22	7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50	17
	광고 전단지 보고	34	12
	길거리 현수막을 보고	20	7
	직원을 통해	42	13
계	300	100	

IV. 연구결과

1.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신뢰도분석을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1)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표 2〉 경험마케팅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성분				h2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감각적 경험	관계적 경험	감성적 경험	행동적 경험	
감각적a5	.800	.181	.205	.148	.590
감각적a4	.791	.130	.298	.100	.527
감각적a6	.772	.190	.251	.203	.645
감각적a9	.762	.228	.119	.207	.742
감각적a7	.728	.157	.167	.234	.737
감각적a3	.725	.153	.265	.160	.736
감각적a10	.719	.309	.141	.220	.637
감각적a1	.717	.164	.211	.068	.690
감각적a2	.657	.082	.298	.024	.681
관계적d5	.173	.702	.235	.285	.650
관계적d4	.288	.701	.220	.277	.656
관계적d7	.225	.699	.233	.270	.717
관계적d8	.167	.696	.176	.334	.742
관계적d6	.170	.662	.200	.349	.628
관계적d9	.060	.653	.163	.387	.546
관계적d2	.242	.629	.137	.147	.544
관계적d3	.267	.587	.219	.284	.511
관계적d1	.142	.509	.234	.371	.536
감성적b4	.264	.233	.751	.232	.599
감성적b3	.340	.226	.736	.093	.551
감성적b1	.371	.146	.693	.099	.673
감성적b2	.343	.253	.662	.190	.611
감성적b8	.235	.239	.569	.330	.614
감성적b5	.256	.367	.533	.379	.472
감성적b6	.356	.332	.524	.186	.495
행동적c6	.116	.362	.173	.661	.545
행동적c7	.080	.404	.150	.649	.700
행동적c4	.225	.332	.056	.622	.659
행동적c5	.179	.388	.328	.619	.628
행동적c2	.203	.374	.166	.572	.667
행동적c3	.322	.329	.319	.534	.655
행동적c1	.276	.356	.206	.516	.606
전체(%)	6.345	5.561	4.078	4.007	KMO=
분산(%)	21.829	18.377	12.743	12.522	.949
누적(%)	21.829	40.206	52.949	65.471	p=.001
Cronbach's α	.891	.843	.705	.801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베리맥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험마케팅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인 1은 감각적 a5부터 감각적 a2까지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감각적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관계적 d5부터 d1까지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계적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감성적 b4부터 b6까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성적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행동적 C6부터 C1까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동적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총 42문항 중에서 내용 타당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문항내용 중복되어 요인 간 완전독립에 간섭을 준다고 판단된 2개 문항은 삭제되었다.

경험마케팅 하위변인에 대한 신뢰도는 감각적경험(.891), 관계적경험(.843), 감성적 경험(.705), 행동적경험(.801)으로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alpha = .705 \sim .891$ 로 조사 되었다.

<표 3> 고객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성분			h2
	요인1	요인2	요인3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인지적고객태도2	.827	.289	.305	.715
인지적고객태도5	.646	.393	.403	.848
인지적고객태도4	.619	.271	.519	.720
인지적고객태도3	.558	.403	.489	.712
인지적고객태도1	.464	.444	.327	.726
감정적고객태도1	.239	.722	.154	.860
감정적고객태도2	.257	.679	.254	.735
감정적고객태도3	.260	.672	.448	.591
행동적고객태도2	.438	.333	.738	.602
행동적고객태도1	.399	.329	.669	.520
전체(%)	2,552	2,324	2,152	KMO=.923 p=.001
분산(%)	24,523	22,238	21,322	
누적(%)	24,523	46,761	68,083	
Cronbach's α	.703	.781	.832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베리맥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객태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인 1은 인지적 2부터 인지적 1까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

지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감정적 1부터 감정적3까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정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행동적 2부터 1까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동적'으로 명명하였다. 고객태도 하위변인에 대한 신뢰도는 인지적 (.703), 감정적(.781), 행동적(.832)으로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alpha = .703 \sim .832$ 로 조사되었다.

<표 4> 고객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성분		h2
	요인1	요인2	
	상품만족	서비스만족	
상품고객만족9	.822	.302	.878
상품고객만족10	.767	.350	.896
상품고객만족8	.767	.378	.840
상품고객만족7	.711	.438	.657
상품고객만족6	.700	.493	.741
상품고객만족5	.632	.585	.733
서비스고객만족2	.370	.872	.698
서비스고객만족1	.370	.861	.731
서비스고객만족3	.445	.801	.767
서비스고객만족4	.565	.581	.712
전체(%)	4.039	3.612	
분산(%)	40.211	35.121	KMO=.944
누적(%)	40.211	75.332	p=.001
Cronbach's α	.708	.823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베리맥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객태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인 1은 상품9부터 상품5까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상품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서비스 2부터 서비스 4까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비스만족'으로 명명하였다.

고객만족 하위변인에 대한 신뢰도는 상품만족(.708), 서비스만족(.823)으로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alpha = .708 \sim .823$ 로 조사되었다.

2. 상관관계 분석

<표 5> 구성개념의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

변수	1	2	3	4	5	6	7	8	9
1	1								
2	.650***	1							
3	.665***	.811***	1						
4	.466***	.574***	.612***	1					
5	.651***	.445***	.477***	.475***	1				
6	.327***	.166***	.163***	.181***	.345***	1			
7	.409***	.527***	.569***	.505***	.333***	.140**	1		
8	.526***	.659***	.715***	.567***	.406***	.142**	.632***	1	
9	.534***	.623***	.607***	.637***	.577***	.416***	.152**	.642***	1

*p<.05, **p<.01, ***p<.001

1.감각적경험 2.관계적경험 3.감성적경험 4.행동적경험 5.인지적 6.감정적 7.행동적 8.상품만족 9.서비스만족

<표 5>에 제기된 바와 같이, 경험마케팅과 고객태도, 고객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험마케팅과 고객태도의 상관관계에서는 .00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마케팅과 고객만족의 상관관계에서도 .00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태도와 고객만족간의 상관관계에서도 .0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험마케팅의 하위요인 감각적경험, 관계적경험, 감성적경험, 행동적경험, 고객태도의 하위요인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고객만족의 하위요인 상품만족, 서비스 만족 등 모든 요인들은 통계적(.01~.001)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검증

측정과 분석을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간경비업의 경험마케팅, 고객태도, 고객만족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 1>은 “경험마케팅은 고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었다.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경험마케팅의 하위변인(감각적 경험, 관계적 경험, 감성적 경험, 행동적 경험)은 고객태도의 하위변인(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에 $p < .001 \sim p < .01$ 수준에서 모든 변인이 정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험마케팅의 하위변인인 관계적 경험은 인지적($\beta = .457$), 감정적($\beta = .331$), 행동적($\beta = .440$)에 $p <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경비업은 관계적 경험이 높을수록 고객태도가 좋아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설 1은 “채택” 되었다.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된 4개의 독립변인은 인지적 전체변량의 52.8%, 감정적 전체변량의 57.5%, 행동적 전체변량의 67.7%를 설명해 주고 있다.

<표 6> 경험마케팅이 고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Beta	t	Beta	t	Beta	t
(상수)		7.677***		4.035***		2.019*
관계적경험	.457	7.481***	.331	7.841***	.440	5.322***
감각적경험	.242	4.777***	.321	4.342***	.176	3.886***
감성적경험	.229	3.750***	.113	3.396**	.116	2.533**
행동적경험	.450	5.421***	.255	4.884***	.333	3.161***
R^2 /F-value	.528/141.932		.575./325.002		.677/199.080	

* $p < .05$, ** $p < .01$, *** $p < .001$

<가설 2>은 “경험마케팅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었다.

<표 7>에서 본 바와 같이, 경험마케팅의 하위변인(감각적 경험, 관계적 경험, 감성적 경험, 행동적 경험)은 고객만족의 하위변인 서비스 만족에 $p < .001$ 수준에서 모든 변인이 정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마케팅의 하위변인(감성적 경험, 행동적 경험)은 고객만족의 하위변인 상품 만족($\beta = .351, \beta = .381$)만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은 상품만족($\beta = -.017, \beta = -.044$)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설 2은 “부분채택” 되었다.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된 4개의 독립변인은 서비스만족 전체변량의 54.8%, 상품만족 전체변량의 73.9%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경비업 경험마케팅은 서비스만족에 고객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표 7> 경험마케팅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서비스만족		상품만족	
	Beta	t	Beta	t
(상수)		7.677***		3.509***
관계적경험	.331	5.259***	-.017	-.322
감각적경험	.242	4.777***	-.044	-.722
감성적경험	.229	3.750***	.351	5.105***
행동적경험	.225	4.553***	.381	5.484***
R^2 /F-value	.548/141,822		.739/345,007	

*p<.05, **p<.01, ***p<.001

<가설 3>은 “고객태도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었다.

<표 8>에서 본 바와 같이, 고객태도의 하위변인(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은 고객만족의 하위변인(서비스만족, 상품만족)에 p<.001~p<.05 수준에서 모든 변인이 정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태도의 하위변인인 행동적은 상품만족($\beta = .457$), 서비스만족($\beta = .431$)에 p<.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경비업은 고객태도가 행동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가 좋아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된 3개의 독립변인은 상품만족 전체변량의 77.7%, 서비스만족 전체변량의 52.8%를 설명해 주고 있다.

<표 8> 고객태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상품만족		서비스만족	
	Beta	t	Beta	t
(상수)		5.109***		7.677***
인지적	.242	4.777*	.381	5.259***
감정적	.447	8.575***	.242	4.777***
행동적	.457	10,911***	.431	7.841***
R^2 /F-value	.777/443,646		.528/141,922	

*p<.05, **p<.01, ***p<.001

<가설 4> 매개효과 가설검증

매개효과에 대한 판단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면 완전매개이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면 부분매개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의 1,000회 반복추출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직무자원이 직무태도 및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분석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유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험마케팅	경험마케팅→고객태도	.439***	-	.419***
→ 고객태도	고객태도→고객만족	.660***	-	.750***
→ 고객만족	경험마케팅→고객만족	.587***	.151*	.735***

*p<.05, **p<.01, ***p<.001

경험마케팅이 고객태도를 통하여 고객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51(.587×.735)이며, Bootstrap 실행을 통한 유의확률은 p<.01 수준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험마케팅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객태도는 경험마케팅과 고객만족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객태도는 경험마케팅과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4는 “채택”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경험마케팅이 고객태도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민간경비업의 경험마케팅 은 고객태도에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개념에서 두 변수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민간경비업에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마케팅의 요인들이 구매의사결정을 비롯한 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고객태도와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간경비업

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증가시키고 만족하는데 경험마케팅 요소인 관계적, 감각적, 감성적, 행동적 요소들을 증진시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의 경험마케팅은 고객만족의 서비스만족에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험마케팅의 관계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은 고객만족의 상품만족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윤세남(2012)의 연구에서도 전시부스에서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마케팅 요소 중에서 행동적경험, 감성적경험, 인지적경험이 브랜드 태도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감각적경험과 관계적경험은 브랜드 태도의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확인하였다.

민간경비업의 고객태도는 고객만족에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고객태도의 하위변인인 행동적은 상품만족, 서비스만족에 .001 수준에서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만(1995)에 의하면 고객의 상품만족은 고객태도의 행동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구매결정인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핵심 내용인데 그 까닭은 고객 만족이 구매행동을 위한 의사결정에 강력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고객 만족은 일반적으로 구매 전의 상품성능에 대한 기대 수준과 상품 사용 후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제성능 수준과의 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객태도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마케팅과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서 고객태도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결과 고객태도는 경험마케팅과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정(+)의 매개효과($\beta = .15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beta = .735$)는 직접효과($\beta = .587$)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경험마케팅이 고객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고객태도를 통한 고객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경비업은 경험마케팅과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서 고객태도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경순 (2004). 경험마케팅. 도서출판 대명.
- 고은별, 최경란 (2009). 체험마케팅을 적용한 라이프스타일 샵의 VMD에 관한 연구: Ikda, 무인양품, Kosney의 VMD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0(6).
- 김기수, 윤성준 (2008). 호텔이용의 경험이 고객만족, 소비자브랜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관련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285-307.
- 김영기 (1996). 스포츠센터의 이용실태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석, 강용주 (1998). 복합점수를 이용하는 소비자만족 측정법들의 준거타당도 연구. 소비자학연구, 9(4), 63-81.
- 김용만 (1995). 시장세분화를 통한 상업 스포츠센터의 경영 합리화 방안. 한국체육학회, 33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174-182.
- 김진환 (2009). 신변보호업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민간경비학회보, 14.
- 문희강, 윤초롱, 박지은, 이유리 (2008). 의류 브랜드의 체험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각이 소비자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2), 181-190.
- 백승민, 이영석, 이세환 (2019). 한국 시큐리티영역 확대를 위한 드론 활용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8호.
- 오정학, 육풍림 (2010). 카지노종사원의 임파워먼트, 셀프리더십과 몰입, 고객지향성 및 조직 유효성의 구조적 관계: 다층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인과효과 차이 검증. 외식경영연구, 13(4).
- 윤세남 (2012). 전시 부스에서의 체험마케팅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무역전시연구, 7(2), 51-56.
- 이경련, 백지희, 박기대 (2010). 글로벌 브랜드의 상업적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슈미트(Schmitt, 1999)의 체험 마케팅적 관점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연구, 16(2), 83-104.
- 이삼기, 김건희 (2017). 호송경비 현금수송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5호.

- 이유재 (2000). 고객만족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소비자학연구, 11(2), 139-166.
- 임명재 (2007). 관광이벤트의 체험이 관광목적지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승희, 이재민 (2018).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실태 및 정립방안.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제7호.

2. 외국문헌

- Allport, G. W.(1935). Attitudes In C Murchison(Ed). Han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ss; Clark University Press.
- Brakus, J. J., Schmitt, B. H., & Zarantonello, L.(2009). Brand Experience: What is it? How is it Measured: Does it Affect Loyalty? Journal of Marketing, 73(May), 52-68.
- Brakus, Kotler,P.& Armstrong. G.(2001). Principle of marketing(9th ed) NJ; Prentice hall.
- Oliver, R. L(1997).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Irwin: Mc Graw Hill, New York, NY.
- Schmitt, B. H(1999). Experiential Marketing. NY: The Free Press.

【Abstract】

The Effect of Private Security's Industry Experience Marketing on Customer Attitude and Customer Satisfaction

Kim, Jin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experience marketing on customer attitude and customer satisfaction.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10 private security companies located in Seoul and Incheon, Gyeonggi-do were visited, and an internet mobile survey was conducted on 320 people using the customer list as the basic data.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through the mobile self-administration method. The survey period was conducted for about 4 months from December 2019 to April 2020, and a total of 300 copies were used as final data, excluding 20 copies with no recovery or extreme values. In this study, a statistical package of SPSS WIN 18.0 were used in the data analysi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was verified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ypothesis was adopted as the experience marketing showed statistically positive (+) influence at the $p < .01$ level. In addition, experience marketing showed a statistically positive (+)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service satisfaction) at the $p < .001$ level, but relational experience, which is a bottom variable of experience marketing, and emotional experience, is a bottom variable of customer satisfaction. The hypothesis was partially adopted because it did not negatively affect the product satisfaction, and the customer attitude was statistically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at the $p < .01$ level, thus adopting the hypothesis. In addition, the hypothesis that customer attitudes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at the level of $p < .05$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marketing and customer satisfaction was adopted.

Key Words: Security, Private Security's Industry, Experience Marketing, Customer Attitude, Customer Satisfaction

^{*} Yongin University Department of Security Professor (The 1st Author)

수상레저 발전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이 세 환

수상레저 발전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이 세 환^{*}

[국문초록]

수상레저안전법은 2020년 5월 26일까지 시행이후 24차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단계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수상레저활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제 39조의2 수상레저 교육사업의 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재 개업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안전점검과, 행정의 관리도 하지만 5년으로 정하여 엄격한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허가제로 해야 한다.

둘째, 제7조 면허시험 면제 관한 사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이다. 체육 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경호보안분야 경비지도사 등 고등교육법에 관련학과 관련 과목 이수자도 현행에서는 동등하게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을 면제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수상레저 사업자 또는 수상레저 안전교육사업자의 허가를 위하여, 경비회사 운영을 위하여 경비지도사, 체육시설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수상레저 사업도 단지 조정면허 1종 취득자가 아닌 수상안전관리 전문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수상레저 스포츠는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국가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수상안전관리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수상레저, 수상레저안전법, 안전법개정, 안전법, 수상레저발전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과 교수(제1저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 재구성

목 차
I. 서론 II. 수상레저안전법 분석 III. 결론

I. 서 론

우리나라 한반도는 약 3170개 유인도와 무인도가 있으며 해안선으로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이 바다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2002년 주 5일 근무로 자유로이 여행하고 레저 문화적 욕구 충족이 증대되면서 레저를 즐기면서 안전이라는 화두를 고민하게 되었다(이철원, 2007).

사회적 흐름은 적극적인 여가선용으로 스포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 시켜 최근에 사람들은 여가 스포츠의 보편화에 따라 단순히 참여하는 만족을 느끼는 단계를 넘어 서서 보다 창의적이고 스킬 넘치는 수준의 여가 스포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졌다. 특히 일상에서 벗어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스포츠를 하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며 해양 및 수상스포츠는 더욱 주목받는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다(박제영, 김경렬 1999).

하지만 수상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는데 반하여 전문지도자 양성과 지도자 인프라 등의 구성은 해양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 수상 레저 스포츠 활성화와 더불어 서울에는 한강근처 경기도에는 근교 저수지 남한강, 북한강 에 마리나 시설 및 요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계류장과 같은 수상레저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한동일 2011).

국민의 수상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 산업 활동을 직접 관여하고자, 동력수상레저 기구 사용에 대한 면허제도 도입과, 레저 활동자의 안전준수 의무 강화, 수상레저사

업자의 자격 요건과 안전의무 부과 등을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정영남, 2013; 해양경찰청, 2013). 아울러 1999년 2월 8일 제정과 2000년 2월 9일 시행으로 2016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1.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 문범식 외(2002)는 수상레저안전법상의 규제 순응도에 관한 조사 연구는 벌칙에 관한 법적인 제재 방안, 정기교육의 폐지문제, 무면허 조종 시 면허소지자 동승에 관한 사고의 책임 및 면허소지자의 안전교육의 시행 방향 검토의 여지를 제시하였다. 윤태익(2003)은 수상레저안전법 발전방향의 조종면허대상의 확대,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관리방안, 내수면 안전관리의 강화방안, 국내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진흥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윤철, 여숙경(2005)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하위 법령의 개정안과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와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적용범위에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해결 방안을 제시 하였다(김정훈, 국승기, 2005). 조종면허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의 필요성과,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 보험 필요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기적 안전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김영남, 2013). 신중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제시, 1급 조종면허의 피견인 실기 도입, 요트면허와 조종면허의 일원화 필요, 조정면허 시험장 확대와 해양레저 선박의 항행 구역확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동법의 안전관련 주요사항을 분석하고 개정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수상 및 해양레저 활성화와 산업발전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수상레저안전법 분석

1. 수상레저안전법의 용어 이해

제1장 총칙 1조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

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고(김종진, 2017),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이며,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최철호, 201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 포함한다.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이고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이정원, 2017).

수상레저기구란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그밖에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 정리한다.

2. 수상안전법 제정 및 개정

1) 동법 시행 2000.2.9. 및 법률 제5910호, 1999.2.8., 제정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수상레저활동의 다양화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면허제도,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제도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 하였다(김성배, 2011).

법 제4조제1항의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등을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를 받도록 하고, 법 제19조제1항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제24조제1항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하였다.

2) 시행 2006.4.1. 법률 제7478호, 2005.3.31., 전부개정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으나,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

어서는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 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홍성화, 2008).

- 법 제23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금지이다. 수상레저활동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함이다.
- 법 제30조 및 제37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 도입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시에 신규검사를, 등록 후 5년마다 정기검사를,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는 임시검사를 각각 받도록 하였다.

(1) 법 제34조 보험가입 의무 이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김은경 2015).

(2) 법 제47조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신규검사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3) 시행 2006.9.27. 법률 제8016호, 2006.9.27., 일부개정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능력 여부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

하도록 하는 한편,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의무가 없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고의무기준을 출발항으로 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었다.

4) 시행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68호, 2008년 3월28일 일부개정

수상레저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와 같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전에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조종면허자의 권리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1) 조종면허의 갱신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 시 갱신기간 연기규정 미비로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던 것을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와 같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전에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 조종면허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2) 주취 조종의 단속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음주측정 공무원의 범위를 경찰공무원과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 단속권한의 법률수권과 단속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제시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단속의 정확성 확보와 단속받는 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함이다.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이 그 계획의 지침 제정과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여 수상레저안전업무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화 하였다.

(4) 등록의 효력 등

「소형선박저당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유권은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효력규정을 두고, 압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신설하여 모터보트의 저당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였다.

5) 시행 2011년6월15일 법률 제10799호, 2011년6월15일 일부개정

수상레저기구의 발달과 수상레저활동의 공간확대에 따른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요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상레저와 관련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이 수상레저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상레저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수상레저·스포츠 분야를 산업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정영남 2015).

- 다른 법률에서 제4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종면허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정실질환자 등을 삭제하였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하였다.
-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하였다.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시 검사요건을 완화 하였다.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있도록 하였다.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6) 시행 2016년 7월8일 법률 제13754호, 2016년 1월 7일 일부개정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법정위탁에서 지정위탁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한편, 조종면허 취소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필요적 취소 사유에서 임의적 취소 사유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또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재개업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영업의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등 보험협회등에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사업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의무보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하였다. 그 밖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와 형식승인·검정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검사 관련 규율을 강화하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와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나 단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수상레저기구 이외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거짓 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하였다.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으로 변경하며, 등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등록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등록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 휴업·폐업 이외에 재개업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휴업·폐업·재개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보험등의 가입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및 형식승인·검정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하였다.
-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이외에도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적조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나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영업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종면허를 받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또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등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자,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7) 시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 일부개정

안전·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이다(동법 제16조).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

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이다(동법 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동법 제34조제7항 신설).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이다(동법 제43조제2항 신설).

8) 시행 2020년 3월24 법률 제17091호, 2020년 5월 26일 일부개정

제19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욱 안전관리 차원에서 강조 하였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으로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강화이다.

Ⅲ. 결론

수상레저 안전법은 2020년 5월 26일까지 시행이후 24차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단계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계선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수상레저활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제 39조의 2 수상레저 교육사업의 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재개업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수상레저사업은 안전은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10년의 유효기간은 너무 길다. 안전점검과, 행정의 관리도 하지만 5년으로 정하여 엄격한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허가제로 해야 한다.

둘째, 제7조 면허시험 면제 관한 사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이다. 생활체육지도자, 경비지도사 등 고등교육법에 관련학과 관련 과목 이수자도 현행에서는 동등하게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을 면제하여서는 않된다.

셋째, 수상레저 사업자 또는 수상레저 안전교육사업자의 허가를 위하여, 경비회사 운영을 위하여 경비지도사, 체육시설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수상레저 사업도 단지 조정면허 1종 취득자가 아닌 수상안전관리 전문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수상레저 스포츠는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국가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수상안전관리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성배 (2011). 4대강살리기 사업과 수변공간의 레저스포츠활동.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2), pp.29-66.
- 김은경 (2015). 스포츠안전과 보험에 대한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2), pp.183-204.
- 김정훈, 국승기 (2005).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관한 의식실태분석. 한국향해항만학회지, 제29권 제10호, pp.891-896.
- 김종진 (2017).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2), pp.71-91.
- 문범식, 국승기, 나호수, 하해동 (2002). 수상레저안전법상의 규제순응도에 관한 조사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8(2), pp.1-8.
- 박재영, 김경령 (1999). 수상스포츠 참가자의 스포츠 사회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1(1), pp.29-37.
- 이근모, 윤이중, 강효민, 이재형, 이남미, 이현미 (2009).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인식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8(6), pp.111-124.
- 이윤철, 여숙경 (2005).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11-124.
- 이정원 (2017). 해난구조료와 수난구조비용의 상호관계에 관한 고찰. 해양정책연구, 32(2), pp.129-168.
- 이철원 (2007). 주 5일 근무제 이후 도시민의 여가 향유형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담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1권 제1호.
- 윤태익 (2003). 수상레저안전법의 발전방향. 해양환경안전학회지, 9(2), pp.79-84.
- 정영남 (2013). 수상레저안전법 쟁점사항 고찰을 통한 개정방안 모색.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6호, pp.373-385.
- _____ (2015). 수상레저시설운영자의 「수상레저안전법」 평가 및 인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52(60), pp.55-66.
- 최철호 (2011). 해양스포츠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1), pp.181-196.
- 한동일 (2011). 해양스포츠지도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지도 가치관 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성화 (2008).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20(2), pp.305-326.

해양경찰청 (2013). 법령자료 <http://ebookkcg.go.kr/home>.

법제처 (2020).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moleg.go.kr.

【Abstract】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Analysis of Amendment of Water Leisure Safety Law for Development of Water Leisure

Lee, Se Hwan^{*}

The Water Leisure Safety Law has been put into force for the second or fourth time since its second or fourth trial and error. Much progress has been made during ongoing institutional mooring. However,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limits to water leisure activities that are regulated by law.

First, Article 39-2: The validity period for registration of the water leisure education business is set to 10 years, and when a business operator who is on leave is to resume business, it must be declared. Safety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control are set for 5 years, and strict control is required. Also, it must be a permit system.

Second, there is a matter concerning exemption from Article 7 license examination. Remarkable as a person registered as a player for power water leisure equipment of a physical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 specifi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 graduate of the department related to the power water leisure equipment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et up in a schoo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hose who have taken courses related to the license-related power floating leisure system. Even those who have completed subject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law, such as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nd security guards in the field of security, are currently conducting the same test and should not be exempted from the test.

Thi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water leisure business or the water leisure safety education business, a security instructor for operating a security company, a life and physical

^{*}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 Security Professor(The 1st Author)

education instructor for operating sports facilities, and a fire for building fire safety management. There is a legal basis for having a qualification of safety manager. The water leisure business also requires a specialized management system for award safety management, not just one with an adjusted license. Water leisure sports must prioritize safety. Emphasize the need for an award-winning safety manager system in th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dimension.

Key Words: Water Leisure, Water Leisure Safety Law, Safety Law Amendment, Safety Law, Waer Laeisure Development

과학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김 대 중 · 한 형 서 · 김 태 우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과학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김대중* · 한형서** · 김태우***

[국문초록]

최근 우리사회의 범죄는 흉악 범죄와 묻지마식 범죄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범죄의 지능화, 다양화, 강력화, 흉포화 등으로 경찰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과학수사와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관들을 중심으로 경찰 과학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학수사관들은 과학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과학수사 분야별 교육에 따른 전문성 약화를 가장 우려했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이 내부 승진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 과학수사관의 감식 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긍정적이었지만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 의하면 과학수사에 분야별 교육과 인사의 공정성 및 장비의 만족도가 전문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과학수사, 교육훈련,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강화, 인사의 공정성

* 서울경찰청 수사부 과학수사교(제1저자)
**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공동저자)

목 차

- | |
|--|
| <p>I. 서 론</p> <p>II. 과학수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p> <p>III. 연구방법</p> <p>IV. 과학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석결과</p> <p>V. 결 론</p> |
|--|

I. 서 론

최근 우리사회는 흉악한 범죄와 문지마 범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지마 범죄는 아무런 연고나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별한 동기도 없이 정신적·심리적으로 극한상황에 이른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행동하는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불행이나 환경을 비판한 자가 자신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최경욱, 2019; 윤선영, 2018). 이와 같이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범죄를 행하는 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이규호, 2017). 그 대표적인 사례에는 유명철 사건¹⁾, 강호순 사건²⁾, 병적인 살인 행각을 일삼은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³⁾, 김성민 사건⁴⁾, 성병대 오패산 터널 살인사건⁵⁾, 김학봉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

-
- 1) 결혼한 처로부터 일방적인 이혼을 당해서 여성을 혐오하는 여성혐오증과 14회에 걸친 범죄경력이 사회부적응으로 나타나 여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발전하여 20여회에 걸친 토막 살인사건이다.
 - 2) 강호순은 2005년 10월경 경기도 안산에서 장모와 처를 살해 후, 검거되기까지 노래방도우미 3명 포함 여성 8명을 살해하여 암매장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 판결한 사건이다.
 - 3) 정남규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학대와 유년기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성적 학대를 당하는 피해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군대생활에 부적응하는 등 사회에서도 적응치 못하여 흥기와 단기를 이용, 초등학생 성폭행과 방화를 동반한 살인으로 14명을 살해하였다.
 - 4) 2016년 5월 17일 새벽시에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노래방 2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케 한 살인사건이다.

한 사건들은 경찰의 과학적인 수사기법과 수사기관의 첨단장비 사용 등으로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행하게 아직도 많은 미제 사건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미래의 수사기법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뢰받는 과학수사로 인정받고 어떠한 범죄 사건도 찾아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최근 경찰의 과학수사기법은 세월호사건의 시신에서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하여 첨단 과학기법을 통해 신원확인을 가능케 했으며, 전북 순천 소재 매실 밭에서 사망하여 부패된 채 발견된 유빙인 사건에서 보듯이 유전자 및 지문 채취로 개인 식별과 신원 확인 등 여러 가지 사건 해결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빠른 신원 확인과 범죄 현장에서의 증거를 훼손·인멸하는 범죄자들에게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범죄 수사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과학수사체계가 각종 흉악범죄 해결에 기여하면서 상당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범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과학수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II. 과학수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과학수사의 개념

과학수사(Forensic Investigation)는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과학수사요원이 범죄 현장에서 현장의 상황과 유류된 여러 자료를 통해 현장을 재구성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법의학, 생물학, 화학 및 물리학, 독물학, 혈청학 등 자연과학과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및 논리학 등의 사회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의미한다(경찰청, 2017). 즉 과학수사요원이 현장 감식에서 취득한 증거자료를 과학적인 수사와 방법으로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

5)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부동산 업자를 살해하려고 사제 총을 제작하여 총을 발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사망케 했던 사건이다.

말할 수 있다(송태화, 2015).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를 접목한 과학수사는 과학의 특성인 객관성과 확실성 및 효율성을 반영한 수사로서 전통적인 수사방법인 진술과 신문위주의 수사에 대응하거나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수사방법을 총망라하고 있다(조민상, 조현빈, 2015; 곽대경, 김양현, 2009). 또한 범인을 발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 활동에서 과학적인 지식·기술과 감식시설·기자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사 기법으로 발전하고 있다(신현기 외, 2012).

2. 과학수사 필요성

한국의 과학수사담당부서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형사와 협력하여 물적 증거의 수집에 노력하고 있는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과 각 지방청 소속의 과학수사계,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소속의 과학수사기획관,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보통신기술과 심리학·사회학 등의 기법을 이용한 범죄수사방법, 현행 「형법」·「형사소송법」이 자백이나 진술의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지고, 지역사회의 붕괴로 인하여 목격자로부터 정보 수집의 한계에 따라 물적 증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적 증거의 수집은 경찰의 과학적 수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특히 과학수사 분야는 현장 감식·법의학 감식·지문감식·족적감식·유전자 감식·총기감식·화재감식·문서 감식·심리감식·사진감식 등 여러 분야가 연계되어 있다. 오늘날 다양화된 범죄 유형과 잔인해진 범죄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추적해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첨단과학수사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과 한계는 위세척·마취분석·도청·무인 속도 단속 장치 등과 같이 개인의 존엄성·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아 영장(令狀)주의에 의한 통제·공소권 남용론·증거능력의 제한 등 법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범죄수사는 물적 증거의 수집만으로는 종결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수사의 기술뿐 아니라 새롭게 검증하는 태도, 추정의 폭이나 확률에 유의하는 등 과학적 사고를 도입한 수사 방법은 수사상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유의할 것이다. 특정한 범죄는 구성요건의 해당성 자체를 과학적 분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이종주, 2007). 이러한 범죄의 수사는 그 분석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분석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따라야 혐의 유무와 경중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한편 각종 교통장비와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그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신속하고 용이한 수사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경찰의 수사관계자도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일상적인 수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신회식, 2010).

3. 공판중심주의와 과학수사의 변화

공판중심주의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중심이 아닌 공개된 법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공방과 입증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김근준, 2008; 이동희, 2008). 수사기관은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됨에 따라 조서나 자백에 의존한 수사보다 공판정에서 직접 유죄의 입증을 다룰 수 있는 인적·물적 증거확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방식에서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수사 중 인권침해의 소지도 문제되어 왔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조서의 비중은 감소할 것이고 범죄를 입증기 위해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훈재, 2014).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광역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개인주의와 증거법상의 제약으로 종래의 신문과 제보 위주의 수사로는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과 검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과 수사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새롭고 강력한 수사방법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해야 한다. 과학은 사물의 원리규명과 유용한 기술개발을 위한 학문으로서 그 수사에 대한 확실성과 유용성을 적용하는 과학수사로 수사력의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곽대경, 김양현, 2009).

4. 선행연구 및 연구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과학수사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 즉,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희주(2017)는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찰 과학수사 인력의 전문화 및 확보를 위해 2013년 과학수사관의 경력 경쟁채용을 했으나, 특성화되지 못한 교육과 범죄현장 투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분석을 하였다. 또한 경찰의 광역과학수사대 조직편성과 광역화에 따른 장비수급문제 및 일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등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찰과학수사조직의 재편성, 과학수사 인력증원 및 장비의 첨단화, 과학수사의 특성화된 전문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민형동(2013)은 「형사소송법」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한국형 배심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수사 지원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발전방안으로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효율성 확보, ② 과학수사 관련 지원조직의 다양화, ③ 국제인증제도의 도입,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의 제정 및 국가검시원의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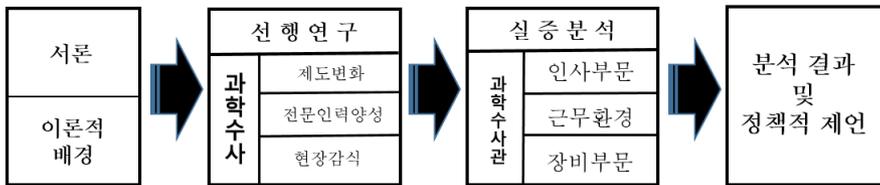
김재운(2018)은 경찰의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의 저해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2,3급지 경찰서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교육신청 기피현상, 실습교육의 부족 및 교육의 비전문성, 교육시간 부족에 따른 전문화의 질적인 문제와 교육시설의 부족, 집합교육의 문제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학수사 인력의 충원을 통한 교육 기회와 OJT(On the job-training)를 통한 실습교육과 이러닝(E-Learning) 등으로 실효성 확보와 ISO 국제표준규격에 맞는 전문수사관 양성과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과학수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 분석을 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과학수사와 과학수사관의 질적인 양성하는 데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분석의 틀

위와 같이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과학수사관의 부족을 비롯해 비효율적인 교육체계 등 과학수사 교육의 문제점, 장비 및 예산의 부족, 그리고 전문성

결여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연구 분석의 틀은 <그림 1>과 같이 간단하게 도식화하였다.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특성

최근 증가되고 있는 지능형 범죄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수사체계의 변화 및 과학수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경찰 과학수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과학수사관들 중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과학수사관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총 206명 중 연령별로는 20~39세 58명(28.1%)이었고, 40~49세가 94명(45.6%)이었으며, 50세 이상이 54명(26.2%)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45.6%(94명)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 20.9%(43명), 고졸 18.9%(39명), 대학원 이상 14.6%(30명)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 이상(경위, 경감)이 104명(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사 30.1%(62명), 경장 이하(경장, 순경)가 19.4%(40명)이었다. 과학수사 근무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이 40.8%(84명)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3~5년 미만이 33.5%(69명)과 5~10년 미만 25.7%(53명) 순이었다. 근무지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31개 경찰서별 관할 중심으로 구분하여 동부권이 26.2%(5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통권과 북

6) 성동, 광진,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수서경찰서

부권⁸⁾ 20.4%(각각 42명), 남부권⁹⁾ 18.9%(39명), 서부권¹⁰⁾ 14.1%(29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과학수사체제와 과학수사 실태에 대한 과학수사관들의 인식도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학수사의 제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학수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관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22일 ~ 11월 25일까지 총 247부를 직접 배부하여 21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 자료로 206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과학수사관의 과학수사에 대한 교육과 질적 발전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과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여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IV. 과학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석결과

1. 과학수사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실증분석

1) 과학수사 교육 분야

과학수사 교육 분야에 대한 과학수사요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이 분야별 교육의 전문성 약화(42.2%)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시설의 부족(18.4%), 비현실적인 교육 시스템(17.5%), 경력경쟁채용요원의 특성화 교육문제(13.1%), 기타(8.7%)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 학력, 계급, 근무경력, 근무지역별 집단간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7)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내근,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경찰서

8) 동대문, 강북, 중랑, 종암, 노원, 도봉, 성북경찰서

9) 동작, 금천, 관악, 구로, 방배경찰서

10) 마포, 영등포, 서부, 강서, 양천, 은평경찰서

났다. 집단 간 인식차이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모든 집단에서 과학수사 교육 분야의 문제점으로 과학수사 분야별 교육에 따른 전문성 약화가 가장 많이 제시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는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한다.

과학수사 활동이 개시되면 과학수사관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태까지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료수집과 과학적 분석을 통한 범죄 사건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전문성이 있는 과학수사관은 사전적·사후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사전적인 방법으로는 전문성을 강조한 채용방식이며, 사후적인 방법으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은 직무활동을 통해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의 총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속적·체계적인 교육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 과학수사 교육 분야의 문제점

구 분	경력경쟁채용요원 특성화 교육문제	과학수사 교육의 전문성 약화	비현실적 교육 시스템	교육 시설 부족	기타	계	χ^2 (df)	p	
연령	20~39세	6(10.3)	28(48.3)	8(13.8)	11(19.0)	5(8.6)	58(28.2)	3.69 (8)	0.884
	40~49세	13(13.8)	37(39.4)	16(17.0)	20(21.3)	8(8.5)	94(45.6)		
	50세 이상	8(14.8)	22(40.7)	12(22.2)	7(13.0)	5(9.3)	54(26.2)		
학력	고졸	7(17.9)	20(51.3)	6(15.4)	3(7.7)	3(7.7)	39(18.9)	13.75 (12)	0.317
	전문대졸	7(16.3)	13(30.2)	10(23.3)	11(25.6)	2(4.7)	43(20.9)		
	대졸	10(10.6)	39(41.5)	17(18.1)	20(21.3)	8(8.5)	94(45.6)		
계급	대학원이상	3(10.0)	15(50.0)	3(10.0)	4(13.3)	5(16.7)	30(14.6)	4.00 (8)	0.857
	경장이하	5(12.5)	16(40.0)	8(20.0)	8(20.0)	3(7.5)	40(19.4)		
	경사	10(16.1)	26(41.9)	7(11.3)	14(22.6)	5(8.1)	62(30.1)		
과학수사 근무 경력	경위이상	12(11.5)	45(43.3)	21(20.2)	16(15.4)	10(9.6)	104(50.5)	5.77 (8)	0.673
	5년 미만	6(8.7)	29(42.0)	12(17.4)	16(23.2)	6(8.7)	69(33.5)		
	5~10년 미만	11(20.8)	22(41.5)	9(17.0)	8(15.1)	3(5.7)	53(25.7)		
근무 지역	10년 이상	10(11.9)	36(42.9)	15(17.9)	14(16.7)	9(10.7)	84(40.8)	11.29 (16)	0.791
	공통권	4(9.5)	18(42.9)	5(11.9)	12(28.6)	3(7.1)	42(20.4)		
	동부권	11(20.4)	19(35.2)	9(16.7)	10(18.5)	5(9.3)	54(26.2)		
	서부권	2(6.9)	13(44.8)	5(17.2)	6(20.7)	3(10.3)	29(14.1)		
	남부권	5(12.8)	19(48.7)	8(20.5)	3(7.7)	4(10.3)	39(18.9)		
북부권	5(11.9)	18(42.9)	9(21.4)	7(16.7)	3(7.1)	42(20.4)			
전 체	27 (13.1)	87 (42.2)	36 (17.5)	38 (18.4)	18 (8.7)	206 (100.0)			

2) 과학수사관의 교육기간

과학수사요원의 교육기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 평균 3.01로 나타나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인식차이는 학력을 제외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세 이상, 계급은 경위 이상, 근무경력(10년 이상)일수록 교육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에는 전문대졸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학수사관의 교육기간이 적정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체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전문성은 교육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 즉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과학수사요원 교육훈련에 있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교육방법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중복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을 통폐합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성과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과학수사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도

과학수사 인사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근무지역을 제외한 변수들은 집단간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과 학력, 계급, 근무경력(5년 미만, 10년 이상) 변수 집단의 경우, 과학수사 인사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체된 인사체계, 과학수사요원 특채 선발의 문제, 광역팀원 관리문제, 검시조사관 운영 및 관리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경력(5~10년 미만)에서는 과학수사요원 특채 선발의 문제(39.6%), 적체된 인사체계(3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에서는 공통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에서 과학수사요원 특채 선발의 문제, 적체된 인사체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동부권에서는 적체된 인사체계, 과학수사요원 특채 선발의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과학수사 인사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체된 인사체계, 과학수사요원 특채 선발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승진적체 문제 해결과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과학수사요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사행정의 취지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 설계와 도입에 그 중심을 두었지만, 인사에 대한 공정성의 저해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유수동, 전성훈, 2017). 본 연구결과와 같은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과학수사요원들의 인식은 업무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조직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학수사 인사관리에 있어 분배적·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 2〉 과학수사 인사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

구 분		적체된 인사 체계	과학수사요원 특채(경력경쟁채용) 선발의 문제	검시 조사관 운영 및 관리문제	광역팀원 관리문제	기타	계	χ^2 (df)	p
연령	20~39세	23(39.7)	13(22.4)	5(8.6)	11(19.0)	6(10.3)	58(28.2)	3.28 (8)	0.916
	40~49세	39(41.5)	26(27.7)	9(9.6)	14(14.9)	6(6.4)	94(45.6)		
	50세 이상	20(37.0)	16(29.6)	7(13.0)	6(11.1)	5(9.3)	54(26.2)		
학력	고졸	15(38.5)	12(30.8)	4(10.3)	5(12.8)	3(7.7)	39(18.9)	9.61 (12)	0.650
	전문대졸	17(39.5)	13(30.2)	5(11.6)	6(14.0)	2(4.7)	43(20.9)		
	대졸	33(35.1)	24(25.5)	11(11.7)	18(19.1)	8(8.5)	94(45.6)		
	대학원이상	17(56.7)	6(20.0)	1(3.3)	2(6.7)	4(13.3)	30(14.6)		
계급	경장이하	14(35.0)	9(22.5)	3(7.5)	8(20.0)	6(15.0)	40(19.4)	8.30 (8)	0.405
	경사	25(40.3)	19(30.6)	8(12.9)	9(14.5)	1(1.6)	62(30.1)		
	경위이상	43(41.3)	27(26.0)	10(9.6)	14(13.5)	10(9.6)	104(50.5)		
과학수사 근무경력	5년 미만	28(40.6)	14(20.3)	10(14.5)	11(15.9)	6(8.7)	69(33.5)	12.75 (8)	0.121
	5~10년미만	16(30.2)	21(39.6)	7(13.2)	7(13.2)	2(3.8)	53(25.7)		
	10년 이상	38(45.2)	20(23.8)	4(4.8)	13(15.5)	9(10.7)	84(40.8)		
근무지역	공통권	25(59.5)	8(19.0)	6(14.3)	3(7.1)	-	42(20.4)	28.79* (16)	0.025
	동부권	17(31.5)	21(38.9)	6(11.1)	6(11.1)	4(7.4)	54(26.2)		
	서부권	10(34.5)	4(13.8)	2(6.9)	9(31.0)	4(13.8)	29(14.1)		
	남부권	13(33.3)	11(28.2)	2(5.1)	9(23.1)	4(10.3)	39(18.9)		
	북부권	17(40.5)	11(26.2)	5(11.9)	4(9.5)	5(11.9)	42(20.4)		
전 체		82(39.8)	55(26.7)	21(10.2)	31(15.0)	17(8.3)	206(100.0)		

* p<.05

2. 과학수사에 대한 실증분석

1) 현장 감식 과학수사 인원의 적정성과 감식 장비의 유용성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감식하고 있는 과학수사 인원수와 감식 장비에 대한 인식도 분석결과는 각각 전체평균 3.33과 3.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 인식차이는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과학수사요원의 직무활동 등 과학수사조직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수사조직은 일반적으로 연령, 재직기간, 계급 등에 관계없이 사안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한 직무들을 수행하게 된다. 과학수사관의 업무수행은 일반적인 공공행정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일반 행정조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직무 내용과 현장 경험 등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직무가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인식하고, 과학수사관이라는 사명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과학수사관들은 한정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경험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집단 간에는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증거분석실 환경의 적정성

과학수사에 있어서 증거분석실은 질적인 과학수사를 보증하는 곳이다. 따라서 과학수사관들의 증거분석실에 대한 인식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학수사관의 증거분석실 환경에 대한 인식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증거분석실 환경의 적정성

구 분		N	Mean	SD	F	p
연 령	39세 이하	58	2.66	1.09	0.01	0.995
	40~49세	94	2.65	0.99		
	50세 이상	54	2.67	1.06		

학 력	고졸	39	2.46	1.05	1.12	0.341
	전문대졸	43	2.81	1.12		
	대졸	94	2.71	1.05		
	대학원 이상	30	2.50	0.78		
계 급	경장 이하	40	2.58	0.96	0.33	0.723
	경사	62	2.61	1.05		
	경위 이상	104	2.71	1.06		
과학수사 근무년수	5년 미만	69	2.64	1.21	0.04	0.965
	5~10년 미만	53	2.64	0.83		
	10년 이상	84	2.68	1.00		
근무지역	공통권	42	2.19	1.31	4.01**	0.004
	동부권	54	2.93	0.97		
	서부권	29	2.76	0.83		
	남부권	39	2.49	0.85		
	북부권	42	2.86	0.93		
전 체		206	2.66	1.03		

* $p < .05$

과학수사관의 증거분석실 환경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인식도 분석결과는 전체평균 2.66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인식차이는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졸의 경우, 경장이하의 경우와 공통권 근무지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과학수사관은 증거분석실 환경에 대해 업무의 만족도와 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 2.66의 보통이하의 만족도가 나타나면서 증거분석실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과학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수사관들은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 과학수사의 분야별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 약화를 가장 염려하였다. 교육 분야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교육기간에 따른 교육성과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현장에서 과학수사를 함에 있어 과학수사 인원과 감식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질적·양적 향상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과학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분석실 환경에 대한 인식도는 모든 집단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통권에서 제일 저조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과학수사관들은 흉악범죄와 사회적인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의 변화에 새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영역별 전문성과 특성화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과학수사 인원 및 감식장비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질적·양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증거분석실에 대한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2017). 과학수사 기본규칙. 서울, 경찰청.
- 강희주 (2017). 경찰의 과학수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대경, 김양현 (2009). 국내,외 과학수사연구소의 소개와 과학수사 발전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1호, pp.59-94.
- 김근준 (2008).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따른 경찰수사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운 (2018). 경찰의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방안: 선발 및 교육훈련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1권, pp.75-106.
- 대검찰청 (2015). 문지마 범죄 분석 II.
- 민형동 (2013).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조직의 법·제도적 발전 방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42권, pp.85-113.
- 송태화 (2015). 법근중학을 활용한 사후 경과시간 추정 향상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기, 박억중,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2012). 경찰학사전. 서울: 법문사.
- 신희식 (2010). 한국경찰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선영 (2018). 문지마 범죄자의 유형화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호 (2017). 문지마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pp.207-225.
- 이동희 (2008). 배심제·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 방향.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pp.735-754.
- 이종주 (2007). 검찰의 과학수사. 한국법과학회 학술대회.
- 이훈제 (2014). 과학수사요원의 교육훈련시스템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민상, 조현빈 (2015). 과학수사요원의 근무제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188-196.
- 최경욱 (2019). 문지마 범죄 피해자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fessionalism of Scientific Investigation
– Focusing on the Scientific Investigator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

Kim, Dae Joong^{*} · Han, Hyung Seo^{**} · Kim, Tae Woo^{***}

Recently, crime in our society is causing social anxiety due to crimes of heinous crime and crime of not asking, and the professionalism of police is required due to intelligence, diversification, strongness, and ferocity of crime. In order to increase the responsiveness of such crimes, police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expertise should be supported.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police scientific investigations, focusing on scientific investigators belong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scientific investigators have raised problems in the following fields to improve the expertis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First, the weakening of expertise by the field of scientific investigation was the most concerned; second,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questioned the fairness of personnel promotion. Third, the satisfaction of forensic equipment of the forensic investigator was somewhat positive, but it was not satisfied. Therefore,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analyzed that improvement is needed because education by field, fairness of personnel, and satisfaction of equipmen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rofessionalism.

* Seoul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of Investigation (The 1st Author)

** JungWon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ssociate Professor (The Corresponding Author)

*** KonKu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The Co-Author)

KeyWords: Scientific Investigations, Education & Training,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Enhancement of Expertise, Fairness of Personnel

부 록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149
- 논문집필요령 155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70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175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191
- 논문투고 일정 192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목적 및 주관】

- ①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원고모집】

- 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라 하고 원고모집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 ② 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학회홈페이지나 학회지 등의 적정한 방식을 통해 회원들이 공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제3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 ①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회칙상의 연구범위로 규정된 “1.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 분야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이면서 영역에 속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자격 및 접수】

-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복수의 투고자일 경우 투고자 모두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단독저자 1편, 공동저자 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가 제한되며,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③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며 논문 투고 후 심사료를 납부한 날로 한다. 접수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된다.
- ④ 온라인으로 논문 원본 파일을 논문게재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접수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일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원고는 본 학회 “논문집필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위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단, 이 경우 반환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날을 논문 접수일로 한다).
- ⑥ 긴급논문투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5조 【학회지 발행일】

- ① 학회지의 발행은 연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7조 【인쇄와 발송】

위원장은 편집방향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발송 절차를 밟는다.

제8조 【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 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제00호(2000년 0월 00일 발행예정)
3. 세부심사결과(해당란에 O표하고 점수란에 점수 기재)

평가기준	등급기준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점수	0 ~ 4	5 ~ 8	9 ~ 12	13~16	17~20	
①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② 연구 방법의 적절성							
③ 내용 전개의 논리성							
④ 연구 내용의 독창성							
⑤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총점 [/100] 점							

※ 각 평가기준별 ‘다소 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4. 종합판정(총점을 근거하여 판정)

구분 (점수)	게재 확정 (91-100)	수정후 게재 (81-90)	수정후 재심사 (71-80)	게재불가 (0 ~ 70)
해당란에 O표시				

5. 심사위원 인적 사항

- 소속/직위:
- 성명:
-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 / 예금주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귀하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논문제목								
심사결과	계재 확정		수정후 계재		수정후 재심사		계재 불가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별첨 2]

학회지 발간 절차 및 처리기간

(※ 총 처리 누적기간: 70일 이내)

절 차	처리기간	누적처리기간
원고심사배정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심 사 의뢰	송부기간 5일	접수마감 후 14일 이내
↓		
심 사	심사기간 2주일	
↓		
심사결과접수	회송기간 5일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
↓		
게재여부결정	3일	접수마감 후 33일 이내
↓		
1차수정지시	7일	접수마감 후 40일 이내
↓		
수정원고접수	7일	접수마감 후 55일 이내
↓		
2차수정지시	3일	접수마감 후 60일 이내
↓		
수정원고접수	3일	접수마감 후 67일 이내

※ 2차 수정지시가 없는 경우 바로 발간절차 진행

논문집필요령

I. 논문형식

1. 논문의 틀

-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영문), 저자이름(국문·영문), 저자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처,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여 첨부한다.
- 3) 원고 작성은 한글프로그램(1997버전 이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를 사용하며, 폭: 184mm, 길이: 265mm, 용지방향: 좁게, 제책: 한쪽(1)으로 한다.
 - (2) 여백의 크기는 위: 35.0mm, 아래: 20.0mm, 왼쪽: 33.5mm, 오른쪽: 33.5mm, 머리말: 15.0mm, 꼬리말: 13.0mm, 제본: 0.0mm로 한다.
- 4) 국문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로 하며, 영문 원고는 국문 원고에 준한다. 20매를 원칙으로 하되, 25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원고의 편집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아래 논문의 요소별 편집에 따른다.

2. 논문의 요소별 편집

- 1) 논문의 제목
 - (1) 글자체는 진한 고딕체(15.0pt)로 지면 가운데 작성한다.
 - (2) 논문제목의 부제를 달 경우에는 앞의 글자에 콜론을 붙여서 쓰되, 뒷 글자와는 한 칸을 띄우고 사용한다.
- 2) 저자명과 소속
 - (1) 저자명은 제목 아래 고딕체(11.0pt)로 기술하며 지면의 오른쪽에 위치시킨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이름간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 (2) 저자명 뒤에는 ‘*’ 표시를 하여 동일한 지면 하단에 저자의 소속의 각주 형태(신명조체, 9.0pt)로 제시한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저자의 순서대로 ‘*’ 표시(두 번째 저자명 뒤 ‘**’ 표시, 세 번째 저자명 뒤 ‘***’ 표시)를 한다.
- (3) 저자가 복수인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
- 3) 요약 및 주제어
- (1) 저자명에서 한 줄 간격을 두고 ‘국문초록’이라는 제목을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작성하여 괄호([]) 안에 위치시킨다.
- (2) 요약의 내용은 논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신명조체(10.0pt)로 150단어(600자) 안팎의 길이로 작성한다.
- (3) 국문초록의 첫머리에는 들여쓰기를 한다.
- (4) 주제어는 고딕체(10.0pt)로 요약내용과 한 줄 간격을 띄워 작성한다.
- (5) 국·영문 요약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 4) 목차
- (1) 목차는 저자명 아래 위치시키며, 도표를 작성하여 기술한다.
- (2) ‘목 차’라는 제목을 가운데 고딕체(11.0pt)로 작성한다.
- (3) 목차의 내용은 로마 목차만을 신명조체(10.0pt)로 기술하며 들여쓰기를 한다.
- 5) 본문
-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고딕체, 14.0pt), 1(고딕체, 12.0pt), 1)(고딕체, 11.0pt), (1)(고딕체, 11.0pt), ①(고딕체, 11.0pt), 가)(고딕체, 11.0pt)의 순서를 따른다.
- (2) 본문의 내용은 신명조체(10.0pt)로 작성하며 초록의 주요어로부터 페이지를 넘겨 기술하고 들여쓰기를 한다.
- 6) 참고문헌
- 참고문헌을 제시할 때는 ‘참 고 문 헌’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고딕체(14.0pt)로 제시하고 참고문헌 내용을 기술한다.
- 7) 영문 요약과 주제어
- (1) 참고문헌을 제시한 뒤에는 영문으로 ‘ABSTRACT’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제시하고 영문 제목(휴먼명조체, 13pt, 진하

계), 저자명(고딕체, 10.0pt), 영문 요약 내용(신명조체, 10.0pt), 주제어(고딕체, 10.0pt)의 순으로 기술한다.

(2) 작성 요령은 국문 초록의 작성 요령과 같다.

- 8)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9) 논문의 요소별 편집과 관련된 자세한 양식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논문 양식’을 참고한다.

II.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1. 일반 문헌의 경우

- 1)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
 - 국내 문헌의 경우 성명과 출판연도를 본문 내에 기입한다.
 - 예) 홍길동(2014)은 국가안보란...
 - 외국 이름의 경우 동양 저자의 경우에는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를 인용했을 때는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 예) 모리아마 타다시(守山 正, 2012)은...
Moriyama(1999)는...
- (1) 인용문헌을 괄호 안에 표기하기
 -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문장 끝에 성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
 - 예)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2013).
 - ...이기 때문이다(Samuel, 2013).
- (2) 문헌의 부분 인용
 - 저자명을 본문 중에 언급하지 않고 저자의 특정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한 특정 자료와 출판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 출판연도 뒤에 자료를 제시한다.
 - 예) ...을 밝혀냈다(홍길동, 김길동, 2010: 표 1 참조).
 - ...을 밝혀냈다(Adams, Smith, & Harrison, 1999: 표 1 참조).

- (3) 본문 중에 저자명과 출판연도가 모두 쓰였을 경우
 예) 1970년 Bruden은...
- (4) 한 단락에서 같은 연구가 반복된 인용된 경우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같은 참고 문헌의 출판년도는 반복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예) Sigmund(2009)은 ...라고 주장했다. 또한 Sigmund은 ...라고 하였다.
- 2)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하였을 경우
-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
 -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두 저자명을 모두 제시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 괄호 안으로 처리했을 때 한국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 ‘&’를 사용한다.
 예) 홍길동과 김길동(2011)는...
 Steven와 Trueman(1998)는...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김길동, 2011; Steven & Trueman, 1995).
-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수행한 연구
 - 처음 인용할 때는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하되, 각 이름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열거되는 저자명 앞에 ‘&’를 삽입한다.
 -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만 적고 공동 저자명은 생략하고 “등” 혹은 “외”로 표시한다.
 예) [첫 인용]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김길동, 홍길동, 이길동, 2005)...
 Stevens, Green, Taylor와 Guanberg(2010) 등은...
 예) [같은 연구일 경우, 두 번째 인용]
 김길동 등(2008)의 연구 결과...
 Stevens 등(2010)은...
- (3) 여섯 명 이상의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
 - 처음 인용 때부터 첫 저자명만 쓰고 첫 저자명 다음에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 다만 6인 이상의 연구에 첫 번째 저자명이 동일한 다른 문헌이 인용되

어 서로 다른 문헌임을 구분해야 할 경우 두 문헌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만큼까지 뒤에 따르는 저자명을 표기한 다음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예) 김길동, 홍길동 등(2008)의 주장처럼...

예) 최근의 연구(김길동, 홍길동 외, 2012)에서...

예) Kants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예) 최근의 연구(Kants et al., 2009)에 의하면...

3) 동명 저자에 의한 복수 연구물의 경우

- 동명 저자(들)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 저자명 뒤 표기된 출판연도로 별개 연구임을 구별한다.

-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저자의 성 앞에 머리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김길동(1998)과 홍길동 외(2000)의 연구에서...

예) 김길동 등(2000)과 홍길동 등(2002)의 연구에서...

예) C. S. Louis(2011)와 G. A. Center(2009)의 연구에서...

4)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 기관이나 단체명을 축약어로 표기해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때에는 두 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로 표기해도 된다.

예) [본문에서 인용할 때]

최근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의하면...

외국의 연구(American Society for National Security, 2012)에 의하면...

예) [두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를 사용할 때]

형정원의(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 연구(TIIC, 2014)에 의하면...

5) 저자가 없거나 익명인 경우

- 연구자가 없는 연구를 인용할 경우 저자명 대신 연구를 지칭할 수 있는 두세 단어(보통은 제목의 시작부분)를 저자명으로 취급한다.

예) “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에서...

“Private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예) ...라고 해석하였다(“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

...라는 주장(“National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 판례나 법령과 같은 법률 자료도 저자가 없는 인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법령의 이름이나, 판례의 표기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연도를 기록한다.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 제12224호, 2014.01.10)에서...

6) 개인 서신

- 편지나 메모, 전화, 전자우편이나 전자매체를 통한 대화가 인용의 출처일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적 서신은 재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전자매체(electronic media)로부터 얻은 정보와 같이 재생 가능한 정보의 출처는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12, 9, 13, 개인 서신)

(Taylor, 2007, 4, 22, personal communication)

2. 재인용, 번역서, 및 부분인용

1) 재인용

-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저자명과 출판년도)과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 저자명이 본문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예) 홍길동(2008: 김길동, 2005에서 재인용)은...

...을 제시하였다(Steven, 2008: 김길동, 2007: 174에서 재인용).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ouis, 1977: Kants, 1976에서 재인용).

2) 번역서

- 원전의 저자명을 적고 십표를 한 후 원전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 인식개선방법에 대하여 Kalman(1988/2011)은...

...라고 하였다(Kalman, 1988/2011).

3) 문헌의 특정 부분을 직접 인용한 경우

- 다른 문헌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삽입할 때는 인용 출처의 쪽수 혹은 장

(章)을 표시한다.

- 장(章)은 ‘장’(혹은 ‘chap.’)로 표기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 콜론(:) 표시를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학술지 권수는 축약어 Vol.로 표기하고 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원전 제목 속에 로마 숫자로 사용된 경우 그대로 사용한다.

예) (홍길동, 2012: 2장)

(김길동, 2009: 15)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Vol. 4: 44-52)

(Kai, 2012: chap. 4)

(Lion & Rush, 1996: 234)

3.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1) 동일 저자의 연구

- 출판연도 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번만 기입하고 출판연도만 기입하면 된다.

- 출판연도까지 동일한 경우 제목의 가나다라 순서로(영문의 경우 알파벳 순서) 출판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예) 선행 연구들(홍길동, 2005, 2011)에서…

선행 연구들(Paker & Rowl, 1998, 2001)에서…

최근 연구(홍길동, 2008a, 2008b)에서는…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저자명의 가나다라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 세미콜론을 찍어 구분한다.

- 다른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 연구에서 주로 인용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맨 앞에 주된 문헌을 인용하고 “또한”이란 용어로 부수적인 문헌을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예) 여러 연구(홍길동, 2011; 김길동, 2012)에서는…

여러 연구자(Rawl, 2011; Steven, 2008; Troy, 2010)들은…

…라고 주장하였다(Hans, 2005; 또한 Harryson, 2008; John, 2010)

- 3) 국내외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된 경우
 - 국내문헌, 동양문헌(국가명의 알파벳 순), 서양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III. 참고문헌

1. 참고 문헌 제시 순서

- 참고문헌의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출판물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출판물을 제시한다.
- 외국 출판물은 동양 문헌(알파벳 순) 다음 서양 문헌 순서로 제시한다.

2. 참고 문헌 표기

- 참고문헌 목록에는 제일 먼저 저자명을 적고 한 칸 띄우고, 괄호 안에 출판연도를 쓴 후 마침표를 한다. 저서의 경우는 한 칸 띄운 다음 책이름(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을 적고 마침표를 하고서 출판 장소와 출판사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출판연도, 연구제목, 학술지명, 게재권(호), 쪽수를 적는다. 학술지명과 게재권(호)는 중고딕체(영문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네 칸 들여쓰기를 한다.
예) 홍길동 (2014). 국가안보론. 서울: 진영사.

Paul, M. D., & Kal, C. A. (1999). *Introduction to National security*, New York : West Publishing.

김길동 (2010). 안전관리사 역할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Michael, D. R., & Jinhong, Z. (1999).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united states air force security polic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9(3), 5-18.

1) 저자명

(1) 일반적인 표기 순서

- 국내문헌은 완전한 성명으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쓰지 않는다(외자 이름도 동일).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문헌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서양문헌은 연구자의 성을 적고 쉼표를 한 다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고

생략 표시의 마침표를 찍는다.

-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서대로 제시하고, 같은 자음일 경우, 모음 순서를 비교하고 모음도 같은 경우 받침의 자음 순(국어사전 항목 순)으로 제시한다. 글자가 먼저 끝나는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글자가 계속되는 것보다 앞에 둔다.
- 영어문헌의 경우 첫 저자 성의 알파벳 순서대로 제시하고 저자명에 포함된 글자 하나의 알파벳 순서를 비교하여 순서를 매긴다.

(2) 맨 앞에 제시되는 저자명이 같은 경우

- 동일한 저자명의 연구는 단독 연구이건 공동 연구이건 출판연도순으로 출판연도가 빠른 것을 앞에 배열한다.
- 맨 앞 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모두 참고 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자 성명이 짧기 때문에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된다.

(3) 출판 연도까지 동일한 저자의 연구

- 제목의 가나다(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단 A나 The와 같은 관사는 제외시키고 제목의 알파벳을 비교한다.
- 소문자 a, b, c 등을 표기하고 순서대로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09a), 국가안보…

홍길동 (2009b), 국민안전…

예) Steve, G. T. (1988a). Origins…

Steve, G. T. (1988b). Risk…

(4) 단체나 기관명의 연구

- 연구 단체나 기관명의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되 기관이나 단체의 완전한 이름을 쓴다.

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4, 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60년사. 서울: 백산출판사.

(5) 익명의 연구나 저자가 없는 경우

-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 제목의 두세 단어를 저자명과 같이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익명(영문 Anonymous)이라고 표기한 후 심표를 찍고 출판연도를 적는다.

- 저자가 없는 경우도 연구의 제목을 저자명으로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의 태동은 (익명, 1955). 안보의 태동. 서울: 백산출판사.

예) National Security (Anonymous, 1955),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

2) 출판연도

- 저자명 바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괄호를 쳐서 써넣고 괄호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1) 미출판 된 연구가 인쇄 중일 경우는 괄호 안에 “인쇄중”이라고 표기하고 해당 저자의 맨 마지막 연구로 취급한다.

(2) 현재 심사 중이어서 출판이 확실치 않는 경우 괄호 안에 “심사중”이라고 표기하고 심사 중인 정기 간행물명을 밝힌다.

예) 김길동 (심사중). 국민안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3) 발표 자료 등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는 경우 괄호 안에 “미간행”이라고 표기하고,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라면 학술발표 년, 월, 일을 기입하고 십표를 한 후 미간행임을 표기한다.

예) 김길동 (2010, 5, 3, 미간행). 국가안보·국민안전 서비스의 발전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프레스센터.

3) 원전의 서지 사항

- 동양과 국내의 학술지명이나 저서명은 중고딕체로, 서양 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영문 제목이나 부제는 시작 단어의 첫 알파벳만을 대문자로 쓴다.

- 참고자료가 책과 같은 통상적인 출처에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제목 옆에 대괄호([])를 하고 써 준다.

예) [CD-ROM], [On-Line} 등

(1) 정기 간행물

① 정기 간행물

- 정기 간행물은 간행물의 완전한 이름과 권수를 중고딕체로 쓰고 본문 인용 때의 표기 방식과 달리, 권수 앞에 “Vol.”이란 글씨를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권수를 적는다. 그리고 권수 번호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호수를 적고 이어서 쪽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다.

② 대학의 논문집

- 대학의 논문집의 경우 기관지명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행기관을 명시한다.

예) 김길동 (2013). 안전서비스의 효율적 목표달성에 관한 연구. 안전연구, 5(1), 56-87. 안전대학교 일반대학논문집.

③ 신문 기사의 인용

- 사설이나 일반 기자가 쓴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발행일자, 연, 월, 일을 괄호로 묶어 쓰고, 기사의 제목과 게재면을 표시한다.

예) 안전일보 (2009, 3, 1). 안전 관리자의 책임. 5면.

- 독자 혹은 특정인의 기고라면, 이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로 취급하여, 일반학술지에 실린 문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익명의 기고일 경우는 기사의 제목 두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명을 대신한다.

예) 홍길동 (2009, 3, 1). 민간경비원의 책임. 경비일보, 5면.

④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김길동 (2014, 겨울). 범죄의 수사구성, 수사연구, 55-98.

(2) 저서를 포함한 비정기 간행물

① 책, 보고서, 학위논문, 안내서(brochures), 요강(要綱), 시청각 매체 등을 포함해서 정기 간행물이 아닌 자료

예) 이길동 (2010).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② 논문 하나가 단행본으로 묶여진 긴 논문(monographs)의 경우

예)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논문집명 권(호), 전 권이 아닌 경우 쪽수 (연속 간행물인 경우는 일련번호).

③ 학위 논문

예) 김길동 (2014). 경호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④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 예) 김길동 (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 ⑤ 미간행 발표 자료
 - 예) 홍길동 (201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결산 보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차 총회, 12월 22일. 경기대학교 대강당.
-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의 인용
 -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적고 마침표를 찍고 장의 제목을 적는다. 그리고 전체 책을 엮은 편집자의 성명을 적고 한 칸 띄고 편집일 경우 ‘편’ 저서일 경우 ‘저’(영어는 편집자명 앞에 “In”을 넣어 시작하고 괄호 안에 ED./편집자가 복수일 경우 Eds.)라고 표시한 후 저서명(중고딕체)을 적고 괄호 안에 해당 쪽수를 적어 넣는다.
 - 예) 한상희 (2006).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최응렬 (편). 경찰개혁론 (pp. 5-15). 서울: 법문사.
 - ⑥ 역서와 편역서의 경우
 - 예) 원저자명 (번역서 출판년도). 번역서명(중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 (역자명 역/편역). 출판지: 출판사. (원전의 출판년도).
 - 예) Durkheim, E. (2008).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황보종우 역). 파주: 청아출판사. (원전은 1897에 출판).
 - ⑦ 초록 문헌의 경우
 - 예)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 ⑧ 재인용한 자료들의 제시
 - 본문에서와 달리 참고 문헌 목록에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한다.
 - ⑨ 논문, 책,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등의 논평 문헌 표기
 - 예) 논평가 성명 (출판연도). 제목 [자료가 기술하고 있는 원자료의 형태

와 제목. 자료가 실린 서명, 권(호), 페이지.

※ 논평 문헌이 아니라 매체를 직접 인용한 경우

예) 감독 및 제작자의 이름 (역할) (년도). 제목. [원자료 형태] 방영지역
(비디오 경우 출시회사 주소지): 방송사명(비디오 경우 제작사명).

예) 김철민, 조현탁 (감독) (2010). 대물. [TV 연속극] 서울: SBS TV.

(4) 전자 매체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인용한 내용의 출처가 마이크로 필름이나 시디롬, 온라인 등의 매체일 경우 그 출처 형태와 출처 정보를 표시한다.

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main/main.html>, 2014년 12월 22일 검색)

(5) 출판 장소와 출판사

- 저서의 경우 출판 사항에 출판 도시명과 출판사명을 적는다.

- 출판지가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거나 다른 곳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도시명 다음에 십표를 하고 국가명(미국은 주(州)명을 공식화된 약자로)을 적는다.

- 출판사명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간단하게 적고 associations, corporations, university press 등은 적되 Publishers, Co., Inc., 등의 불필요한 용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빼다. 그러나 Books와 Press와 같은 고유 명사는 그대로 쓴다.

- 원전의 출판 도시가 하나 이상일 경우 맨 앞에 나와 있는 출판지나 출판사의 본사가 있는 출판 도시를 적는다.

IV. 서 평

1.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고 후자는 저자 의뢰 혹은 평자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2.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의 특징을 온전히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심사(可조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3.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4. 서평은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가격, ISBN을 포함한다.

V. 기 타

1. 외래용어 및 외국어

-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 외국 인명과 논문 제목은 원어명은 그대로 표기한다.

2.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예, 표 1, 그림 1), 표 제목(고딕체, 10pt)은 표 위쪽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그림 제목(고딕체, 10pt)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에 위치시킨다.
 - 표의 설명주는 “주: 1), 2), 3)”으로 시작하고(※주: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 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 과 같이 표기한다.
 - 표 작성에서 줄긋기는 가로줄만을 사용하며 세로 테두리선을 쓰지 않는다. 가장 바깥 가로 선은 굵은 선을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을 사용한다.
 -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 원고 작성의 편의상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3.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집필요령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 및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 집필요령에 없는 내용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에 따른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12. 22. 제정
2019. 8. 2.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조의 2호에 규정된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②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동의를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 ① 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

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1년을 기준으로 3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기타 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업 무】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6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3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의견서 등을 우송한다.

제8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

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평가서에 실증논문과 개관논문 또는 이론논문을 구분하여, 7개 심사기준별로 7점 척도에서 평가하며, 총점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추가적 경험적 연구 첨가 및 재심사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각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여, 필요시 논문수정제의 요구서를 첨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 ② 2차 심사는 ‘부분 수정 후 게재’ 또는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⑤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10조 【논문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0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편당 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1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 ① 학술지 내에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각 권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②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③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④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 ⑤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⑥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제12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13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 【기타】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작성 세칙 또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운 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 【내규개정】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8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당시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4. 12. 22 제정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의 학술지인 본 학회지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논문기초자들에게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1장 연구윤리, 2장 연구진실성심사로 나뉜다.

제1장 연구윤리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①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②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④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①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②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학자는 연구참여자로 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를 참여자의 서명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참여자가 영아, 유아, 또는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개입(intervention)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는 연구 시작 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서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5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6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면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③ 위 1.항의 경우에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연구 불참여의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연구를 시작한다.

제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해당 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에서 속이기】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시점을 넘지 않는 기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설명(debriefing)】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③ 사후설명 정보의 제공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 ②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 ③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 ④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 ① 주요부정행위 :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자료(data)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연구자료(data)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주요부정행위이다.
 -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간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중출판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 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부적절행위 :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

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 조사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 주요부정행위 교사·강요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출판 업적】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용어정의
 -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는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 ③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 · 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학술적 · 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 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 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⑥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15조 【자료보관 및 재검증을 위한 공유】

- ① (보관)
 - 수집된 원자료를 매체(디스켓, CD, USB 등)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 책임은 주저자에게 있다.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기록자료라고 한다.
 - 기록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결론도출에 근거가 된 자료를 근거자료라고 한다. 근거자료의 보관은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기 위하여, 출판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않는 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 연구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가 어려운 경우
 - 소유한 근거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는 경우
 - 재검증의 필요가 없음을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
- ③ 전항에 의해 근거자료를 제공받은 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근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근거자료를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연구부적절행위로 간주되고 연구진실성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부 훈령 236호 (2007. 2.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3. 8 제정, 2004. 8 수정)의 3장 “연구관련 윤리”.
- APA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2 제정)의 8장 “연구 및 출판”.
- 프린스턴대학교 학부생을 위한 출판규정 (2006-2007).
-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2008. 7. 30).
- 과기총뉴스레터 (2008. 8.5). “올바른 논문저자 표기와 연구윤리”.
- 연구윤리정보센터 “좋은연구” 웹사이트 (<http://좋은연구.kr>, 또는 <http://www.grp.or.kr>). (2008. 8.15)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6. 6.16. 규칙 제1563호)
-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07. 1. 2 제정).
-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7. 3. 19 제정).

제2장 연구 진실성 심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④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기고하는 모든 저자들 및 관련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절차】

- ① 제보 또는 혐의가 접수 된지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집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 및 해당기관에 알린다.
-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5조 【예비조사위원회】

- ①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혐의도 접수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제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제보·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제1부 13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본 학회지에 기고하였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제8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1조 【본 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조사위원회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윤리위원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판정 또는 조치 필요사항
 -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7조 【판정 및 조치】

- ① 본조사결과의 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 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판정사항은 제보자,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산하 학술지 편집위원장, 기고자, 기고자의 소속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제20조 【시행세칙】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정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유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 【심사주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논문투고 일정

순서	전반기	후반기
원고접수마감일 / 발행예정일	4월 30일 / 6월 30일	10월 31일 / 12월 31일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1. 위에 명기된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작성규정 : 학회지 편집양식 A4 용지 20매 기준 (별쇄본 및 심사료 포함)
4. 논문투고시 단독저자-1편, 공동저자-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제한
5. 투고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자명을 표기할 때 저자가 다수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으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투고 방법안내

온라인 논문투고 : knspsa2014@gmail.com 또는 홈페이지(<http://www.knssa.com>)

3. 온라인 논문투고 후 문의

담당자 : 이대권 (010-8873-9975/knspsa2014@gmail.com)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장항배
(중앙대)

편집위원	문준섭 (가톨릭관동대)	김도우 (경남대)	김양훈 (극동대)	김태훈 (성신여대)	윤민우 (가천대)
	이창배 (울산대)	강욱 (경찰대)	김민지 (숙명여대)	이환수 (단국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0호

인쇄일 2020년 6월 28일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발행인 박준석
편집인 장항배
발행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449]-[7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대학교134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층 박준석교수 연구실
전화 (031) 8020-2633
FAX (031) 8020-2882
E-mail knspsa2014@gmail.com
Homepage <http://www.knssa.com>

인쇄처 백산출판사
전화 (02) 914-1621(代)
F A X (031) 955-9911
edit@ibaeksan.kr www.ibaeksan.kr

비매품